

2003년
증권제도동향

2004. 1

연구위원 정윤모
연구위원 박현수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서 언

본 보고서는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증권제도의 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작년에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고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과거 어느 해에 못지않게 수많은 법령과 규정들이 폭넓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개념이 사라지면서 무한경쟁에 노출된 우리 증권 시장과 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온 결과라고 본다.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데, 그 속도와 폭이 더욱 빨라지고 더욱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찾아내고, 이해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관련법이나 증권·선물시장의 통합작업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변경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인수업무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식워런트증권과 주식연계증권을 도입하였다. 시간외시장제도와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를 개선하고, 호가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의 신규상장요건과 상장폐지요건을 개선하였다. 증권산업에서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자산운용업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증권행정감독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포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감위의 행정조치 내용을 정비하였고, 과징금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발행기업에 있어서는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주

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내부관리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동일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감위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정윤모 연구위원과 박현수 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자료정리 및 편집에 도움을 준 김선욱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4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박상용

목 차

I.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50
3. 선물·옵션시장	55
4. 증권의탁·결제	58
5. 기업공시	68
II. 증권산업	80
1. 증권회사	80
2. 자산운용회사	98
3. 투자자문회사	104
III. 증권행정감독	105
1. 법적규제기관	105
2. 자율규제기관	111
IV.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17
1. 기업경영감시	117
2. 지원·관리제도	122

V. 기업구조조정	127
VI. 기타	129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135
1. 증권거래법	135
2. 증권거래법 시행령	136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38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39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1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
7. 조세특례제한법	143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3
9. 신탁업법 시행규칙	144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45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45
2. 증권업 감독규정	154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61
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164
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67
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167
7.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168
8.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71
9.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4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75
1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176
12.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176
13. 신탁업 감독규정	177
14.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178
15.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78
Ⅲ. 증권거래소 규정	180
1. 업무규정	180
2. 업무규정 시행세칙	183
3. 선물·옵션 업무규정	190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193
5. 유가증권 상장규정	194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
7. 상장법인 공시규정	205
8.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206
9. 공정공시 운영기준	208
Ⅳ. 증권업협회 규정	210
1.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10
2.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219
3.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21
4.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4

5.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230
6.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32
7.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34
8.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237
9.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238
10.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39
11.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248
12. 운용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250

V. 증권예탁원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51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52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54
4.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256
5.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257
6.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258
7.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258
8.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259
9.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59
10. 담보콜거래 관리업무규정	260

I. 증권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서명·확인 의무화

(증권거래법 8조 4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3 6호·7호 : 2003/2/24 개정·시행)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가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 또는 이러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를 유가증권에 추가

- 유가증권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지정 유가증권의 범위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조의3 : 2003/3/10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6호 및 7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를 증권거래

법시행령 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명시

○ 상장법인 등의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요건 폐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7조 1항 : 2003/1/29 개정 · 시행)

— 이사회결의일 전일 주가에 따라 시가발행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가발행의 자율성을 제고

- 종전에는 공모가액 결정보다 상당기간 앞선 이사회결의일 전일에 산정한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시가발행을 허용

○ 새로운 유가증권의 도입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정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3/3/19 개정 ·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시행령 2조의3 6호 ; Equity Covered Warrant) 및 주가연계증권(시행령 2조의3 7호 ;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전매가능성 기준 마련

-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형태 및 유통과정상의 특성이 채권과 유사하므로 채권에 준하여 전매가능성 판단기준을 마련
- 실물증권의 발행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12조 1항 5호)

—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17조 2항 6호, 20조 1항 6호)

- 주식워런트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은 증권회사가 파생금융상품영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만기상환능력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토록 함

— 추가연계증권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일부 단축

- 만기시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추가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을 무보증채권과 동일하게 7일로 단축 (23조 5호)
-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발행조건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연계증권의 지급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대하여는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로 단축 (23조 6호)

○ 기업공개·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의 예외적인 적용면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3조 2항 : 2003/9/13 개정·시행)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청약일 전에 다음의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의 적용을 면제

-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주식수를 당초 공모수량의 80% ~ 120% 이내에서 변경
-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초과배정하거나 초과배정주식수를 변경

○ 용어변경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9조, 27조 등 : 2003/9/13 개정·시행)

— 간사회사 → 주관회사

○ 주관회사 제한의 완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조 11항, 6조, 14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주관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공모예정기업의 주관회사 선택의 폭을 확대하되, 공모예정기업과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간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

- 제한의 대상이 되는 상호출자비율한도를 3%에서 5%로 완화
- 발행회사 임원이 주관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관회사 허용
- 공정위가 인정한 계열분리법인에 대해서는 친족조항의 적용 배제
- 계열분리후 1년 미경과법인을 이해관계인에서 제외
- 이해관계있는 인수회사의 실질적 간사업무 수행 금지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의 일부 예외 인정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조 2항 3호 : 2003/8/26 개정, 9/1 시행)

— 국내외 동시 상장시 대표 주관계약 체결시한(6개월) 적용 배제

- 해외적격시장의 경우 그 진입요건이 엄격하고, 대표 주관계약 체결시한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없으며, 국내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수 증권회사가 기업실사에 공동참여하므로 체결시한의 예외를 인정

○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diligence) 이행에 대한 심사 강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조 3항 : 2003/8/26 개정, 9/1 시행)

— 발행회사의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실사근거 및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9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시의 주식배정비율을 조정

- 우리사주조합원 :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의 20% 의무배정

협회등록공모시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

-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 : 공모주식의 30% 배정

	기존	2004년 3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	2004년 9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
거래소상장	45%	40%	30%
협회등록	55%	45%	30%

* 배정비율의 축소에 따른 고수익펀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9월까지 점진적 축소

-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0% 이상 배정
- 기관투자자 : 잔여주식 배정

○ 초과배정옵션 부여시 매수가격 인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0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간접적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과배정주식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격의 100%에서 95%로 완화

○ 시장조성제도 폐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1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한해 상장후 1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가 장외에서 매수토록 의무화

• 일반청약자에게 put-back option 부여

○ 조합을 통한 주식보유를 직접보유로 간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2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주관회사의 자격과 관련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보유를 직접보유로 간주

○ 1인당 청약한도 제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8조 4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되어있는 공모주식의 10% 이내에서,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를 정함

• 청약증거금 대출규모, 공모물량, 발행가격 등을 고려

○ 대표주관회사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의 적정 설정의무 부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8조 5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해야 함

나. 유통시장

○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서명·확인 의무화

(증권거래법 8조 4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

○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 허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조의4 : 2003/3/10 개정·시행)

-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매매중개 등을 하는 경우, 종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종가기준 $\pm 5\%$ 이내의 가격변동을 허용
 - 단일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은 30분으로 설정
 - 다만,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가 임의로 결정한 매매체결 시각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5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주인수권증서 중개 증권회사 지정의 예외인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8조 : 2003/1/29 개정·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지정의무를 면제
 - 종래에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중개 증권회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투자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시장이 곤란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방법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06조 1항, 111조 4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의 매수·매도주문을 허용하고, 매수주문의 호가범위 상한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확대
 - 매도주문의 호가범위는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
 - 다만, 매수·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근거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1조 5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의 근거를 확보
 - 다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매도가격은 당일 종가와 당일 종가로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범위내로 제한

- ECN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근거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0조 1항, 111조 6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ECN시장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적용되는 호가 및 수량 등의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 자기주식 처분시 유가증권시장의 정규시장, ECN시장 및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처분방법 중 2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신고서에 그 처분방법 및 각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주식의 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청약자로부터 공모주식 매입시 공개매수의무 면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2조 15호 : 2003/9/13 개정·시행)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시 인수증권회사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청약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도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공모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공개매수의무를 면제

- 주금납입에 의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초과시 기준일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7-1조 1항 : 2003/12/31 개정·시행)
 - 주금납입으로 인하여 주금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 및 외국인 취득주식수의 계산기준일을 납입일 다음날로 함

- 외국인의 DR 원주전환 신고의 전산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7-3조 1항 : 2003/12/31 개정·시행)
 - 외국인이 증권예탁원에 전환지시를 하면 증권예탁원이 금감원에 전산보고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서면보고 절차를 폐지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End)방식의 도입 및 호가정보공개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3/9/26 개정, 시행일 지정)

- 시가 및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시간적 범위를 연장

(22조 8항, 9항 : 2004/1/26 시행)

-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종목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를 임의종료 (4조 3항 1호 : 2004/1/26 시행)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정보공개 등 관련규정 정비

(82조 : 2003/10/6 시행)

- 예상최우선평가 공개 → 예상3우선평가 공개

○ 호가 및 주문유형의 다양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2조 1호의2, 2호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 또는 매수별로 상대방향 또는 동일방향의 특정가격으로 지정하는 호가 및 주문유형을 신설

-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 상대방향으로 최유리가격으로 지정
-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 : 동일방향으로 최우선가격으로 지정

○ 시간외시장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4조 3항 2호 등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거래시장을 신설

매매거래시간	07:30 ~ 08:30
종 류	장개시전 시간외증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가격요건 등	전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준용

○ 자기주식 매매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3/9/26 개정, 12/1 시행)

—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호가를 허용 (34조 1항)

-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호가할 수 없음

—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의 신규호가 및 정정호가의 가격제한을 완화

(34조 1항 2호, 2항)

기 준	개 정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의 가격 중 높은 가격부터 10호 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이내	당일 중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의 최고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부터 10호가가격 단위 낮은 가격 이내

— 시간외대량매매방법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을 허용하고, 가격은 증가
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범위 이내로 제한 (32조 5항, 34조 4
항 3호)

— 자기주식매수 특례제도의 가격요건 정비 (34조의2 2항)

- 일반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선에 준하는 가격요건 정비
 -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 매매시에도 직접취득(처분)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32조 6항, 34조의3, 63조의2)
- 매매거래중단제도의 보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25조 2항 4호, 4호의2 : 2003/9/26 개정, 10/6 시행)
- 풍문 및 보도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사유에 신설된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명문화함
 - 분식회계 발생,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 의견거절
- 대용증권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70조 2항 1호 : 2003/9/26 개정, 10/6 시행)
-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즉시 퇴출사유 등에 해당하여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
- 기준가격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4조 1호 및 3호, 별표1 : 2003/5/27 개정, 6/30 시행)
- 기준가격 결정시 복수의 합치가격이 있는 때에는 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 평가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의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신규상장종목의 발행가액이 복수인 경우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은 발행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가중평균한 가격(VWAP)으로 함

-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시 별도의 구분표시를 의무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 1항 13호 및 69조 8호 : 2003/5/27 개정, 7/28 시행)
 - 규정 16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시에는 주문 및 호가표에 별도의 구분표시를 하도록 함

- 프로그램매매 및 상장지수펀드 관련호가 구분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9조 1항 12호, 112호의2 및 69조 7호, 7호의2 : 2003/5/27 개정, 6/30 시행)
 - 프로그램매매 및 상장지수펀드(ETF)관련호가를 특성별로 재분류하여 차익거래 관련호와와 주식집단매매 관련호가로 구분함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옵션거래 관련호가 : 지수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 ETF 관련호가 : ETF 차익거래, ETF 설정을 위한 주식집단 거래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익거래 관련호가 : 지수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ETF 차익거래 · 주식집단매매 관련호가 : 비차익거래, ETF 설정을 위한 주식집단매매거래

- 상장지수펀드(ETF) 호가가격단위 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21조 2항 3호 : 2003/8/20 개정, 9/1 시행)
 - 1주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ETF의 경우 호가가격 단위를 기존 50원에서 10원으로 조정

- 동시호가 수량배분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 2항 : 2003/8/20 개정, 8/25 시행)

— 동시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량배분단계를 6단계로 확대

기 준	개 정
매매수량단위의 10배 → 잔량의 1/2 → 잔량	매매수량단위의 10배 → " 50배 → " 100배 → " 200배 → 잔량의 1/2 → 잔량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End) 기준 마련 및 호가정보공개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장개시(장종료) 5분전부터 장개시(장종료)시까지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종가)를 기준으로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를 적용

(24조의3 1항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장개시(장종료)후 5분 이내에 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까지로 함

(24조의3 1항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즉시 공표하며,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 및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24조의3 4항, 5항 : 2003/9/26 개정, 9/29 시행)

— 신규상장종목 등 호가증가로 인한 매매체결 지연이 우려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4조의6 6항 : 2003/9/26 개정, 9/29 시행)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82조의3 : 2003/9/26 개정, 10/6 시행)

- 예상최우선평호가 공개 → 예상3우선평호가 공개

- 호가 및 주문유형의 신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호가(주문)의 종류 및 유형에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를 신설 (7조 1항 1호, 9조 1항 3호·6호, 69조 6호)
-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의 가격규제
(2조의2 내지 2조의5)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을 부여 가능 (9조 1항 6호의2, 69조 10호, 10조 3항)
- 최유리지정가호가 등 신설된 호가유형(조건)의 경우 공매도호가, 시가기준가종목, 정리매매종목, 단일가매매의 경우에 입력할 수 없도록 함 (11조 2항 2호)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 도입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3/9/26
개정, 10/6 시행)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한 매매신청방법을 마련

(34조 1항 1호, 36조 1항, 37조의2 1항)

- 매도 및 매수 쌍방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함

— 회원이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내용의 변경 가능 (34조 3항, 36조 5항, 37조의2 5항)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의 접속장애시 처리방법을 규정

(34조 4항·5항, 36조 5항, 37조의2 5항, 38조 2항)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의 접속장애 등으로 협상내용의 통보·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여 호가할 수 있음
- 회원이 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외시장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1항 2호,
37조 2항, 38조 1항 4호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신설

- 호가접수시간 : 07:30 ~ 08:30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가격요건은 전일 종가를 기준

○ 자기주식매매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신규호가의 회수를 기존 1회에서 분할호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회수제한을 폐지 (40조 2항)
- Stock Option 행사시 교부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호가(주문)의 경우 별도 구분표시 (9조 15호의2, 69조 8호의2)
- 자기주식신탁매매의 수량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의 수량으로 함 (40조의 3)
- 자기주식신탁매매의 수탁방법은 일반 자기주식매매의 경우를 준용 (68조의2)

○ 대용증권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3/9/26 개정, 9/29 시행)

- 비상장증권투자회사 주권을 대용증권에 추가 (65조 2호·3호, 71조 5호, 72조 2항, 73조 1항 1호, 76조의2, 78조 2항)
 - 대용가격 산출기준일, 적용시기, 산출방법, 기준시세, 사정비율 등은 수익증권의 경우를 준용
- 회원이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환금성 등을 감안하여 사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77조 6항)

- 투자자분류코드 정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67조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세분화

기 존	개 정
외국인 :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 (ID)가 있는 경우 : 9000 · 그 밖의 외국인 : 9001

- 투자자분류코드 변동시 회원은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통계의 불일치를 해소

- ELS(Equity-Linked Security)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3/3/31 개정·시행)

- ELS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을 채권에 관한 규정 준용 (17조 2항)
- ELS의 매매거래를 위한 업무규정 및 세칙의 개정 (부칙 2항)

- 위조 및 변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유가증권 상장규정 45조 3항 1호·2호 : 2003/3/31 개정·시행)

- 상장유가증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때 매매거래정지기간을 1일로 단축

- 회계처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거래소 상장 제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4조의2, 4조의3 : 2003/6/13 개정, 6/16 시행)

- 주권의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한 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

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상장심사를 기각하고 이미 상장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효력을 불인정

○ 상장이 불허된 법인의 시장진입 제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48조의2 :

2003/6/13 개정, 6/16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상장심사가 기각되거나 상장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법인은 3년간 상장신청을 제한

- 다만,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정정하여도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42조의2 : 2003/6/13 개정, 6/16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폐지기준 미해당시 관리종목지정 해제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장폐지된 법인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48조의2 2항 : 2003/6/13 개정, 6/16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자본잠식 또는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후 3년간 시장진입을 제한

○ 주권의 신규상장요건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3/9/5 개정, 9/8 시행)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요건 강화 (15조 2항 1호)

- <2요건>의 자본금 및 자기자본에 관한 요건을 각각 3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으로 강화

— 상장예정주식수 요건 강화 (15조 1항 2호, 2항 1호)

- 상장예정주식수에 관한 요건을 100만주 이상으로 강화

— <1요건>의 매출액요건을 강화 (15조 1항 3호, 2항 2호)

기 준	개 정
최근사업연도 200억원 이상	" 300억원 "
최근3사업연도 평균 150억원 이상	" 200억원 "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요건의 폐지 및 유보율요건 신설

(15조 1항 5호, 2항 3호)

- 현행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한 요건을 폐지
- 재무안정성에 관한 요건으로서 유보율(50%)요건을 신설

— 이익요건의 강화 (15조 2항 3호)

-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이익액 20억원 이상으로 강화

○ 국내·외 동시상장의 원활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3/9/5 개정, 9/8 시행)

— 주식분산요건의 특례신설 (15조 1항 4호)

- 국내·외 동시상장의 경우 적격 외국증권시장에서 공모하는 주식을 공모비율의 산정시 포함하고, 국내에서 공모하는 주식수가 100만주(액면가 5천원)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 신설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예외사유 추가 (15조 1항 13호)
 - 적격 외국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으로 발생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에 대해 예외를 인정
- 상장전 유상증자 규모제한에 대한 예외신설 (15조 1항 12호)
 - 적격 외국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에 대해 유상증자 총액 산정시 불산입

○ 상장폐지법인의 재상장요건 강화

- 기업규모에 관한 요건을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의2 1항 1호, 2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자본금 : 50억원 이상
 -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상장예정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 30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요건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의2 1항 3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소액주주지분율 : 20% 이상
 - 소액주주수 : 500명 이상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 70% 이하

— 이익요건의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의2 1항 4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최근사업연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이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익율이 5% 이상이거나 25억원 이상으로 이익요건을 강화

— 상장폐지후 합병제한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의2 1항 6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상장폐지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재상장요건을 비적용

— 제3자배정 증자주식에 대한 매각제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4조 4항 4호 : 2003/9/5 개정, 9/8 시행)

- 상장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해서 상장 후 6월 또는 발행 후 1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매각을 제한

— 예비상장심사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유가증권 상장규정 4조 1항, 4항, 5항 : 2003/9/5 개정, 9/8 시행)

- 상장폐지된 법인이 재상장하는 경우 예비상장심사를 실시

○ 상장지수펀드의 신규상장요건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의4 2항, 18조 2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는 지정판매회사 중 1사 이상을 유동성공급자로 지정

- 운용회사와 지정판매회사간에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 상장지수펀드의 괴리율 요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의3 2항 및 40조 2항 : 2003/12/26 개정)

- 괴리율 3% 초과상태가 10일간 계속 또는 분기별로 20일 이상인 경우에 상장폐지 (10일 이상 연속 괴리율은 2004/1/29부터 적용, 분기별 괴리율은 2004/1/1부터 적용)

- 괴리율 = [(종가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 × 100

○ 유동성공급자 미지정 요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의3 2항 및 40조 2항 : 2003/12/26 개정, 2004/7/1 시행)

- 유동성공급자제도 시행일 후 1월 이내에 유동성공급자 미지정시 상장폐지
- 매분기말 기준으로 최근 3월간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 미지정시 상장폐지

○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 예고 (유가증권 상장규정 41조의2 1항, 2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괴리율이 3%를 초과하거나 또는 유동성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유동성공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음을 예고

- 거래량 관련 퇴출요건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42조의2 1항 7호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거래량 관련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상의 비율요건을 단일화(1%) 및 절대수량(10만주) 개념을 추가하고, 산정기준을 상장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로 전환
 - 적정분산요건 충족시 거래량 요건의 적용을 면제
 - 소액주주비율 20%, 그리고 소액주주수 500명

- 주가 및 시가총액 관련 상장폐지요건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 1항 16호, 17호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관리종목지정 이후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유예기간 중 주가(시가총액)가 액면가액의 20%(25억원)이상으로 10일간 계속 및 누적일수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 공시의무위반과 관련 상장폐지요건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37조 1항 12호 : 2003/12/26 개정, 2004/1/1시행)
 -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 전에 발생한 공시의무와 관련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는 상장폐지기준을 미적용

- ELS(Equity-Linked Security)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3/3/31 개정 · 시행)
 - ELS의 신규상장신청 및 변경상장 신청시 견양제출을 생략
(2조 2항 1호, 6조의4 1호, 6조의5 2항 1호)

- ELS의 액면을 1만원 이상으로 제한 (10조 2항)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7조 : 2003/6/20 개정, 6/23 시행)
 - 지정시기 : 관리종목지정기준 해당사실 확인일의 익일
 - 해제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 연장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조의5 : 2003/6/20 개정, 6/23 시행)
 -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을 기존 2월에서 3월로 연장

- 상장관련 서식의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 2003/6/20 개정, 6/23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재상장신청서 서식 및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 신고에 관한 서식 등을 개정

- 주권의 재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서류 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조의3 4항, 5항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 재상장의 경우에도 예비상장심사를 거치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되, 주권 신규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준용

-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조의7
2항, 3항, 5항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를 재상장의 유형별로 명확히 열거하여 재상장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산정기준 폐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조의4, 9조의2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 및 재상장요건 중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산정기준을 폐지

- 적격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8조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의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외 동시공모로 인정하는 적격 외국증권시장의 범위를 정함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 변경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7조
2항 12호, 13호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를 변경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사유해소 확인일 익일 → 관리종목 지정일을 포함하여 60 매매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상장폐지기준 미해당시로 한정)

- 유동성 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9조의2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가 지정판매회사 중 1사 이상과 체결하는 유동성 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
 - 매도/매수호가간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이내로 유지되도록 의무적으로 호가 제시
 - 매도/매수호가간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면 그로부터 2분 이내에 의무호가 제시
 - 의무호가를 제시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의 신고사항 추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0조의4 1항 16호 및 10조의8 2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가 지정판매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변경·해지시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거래량 요건 적용시 월평균거래량 산정방법 명시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1조 6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분기 중 병합·분할·증자·감자로 인한 월평균거래량 조정은 당해 비율대로 조정
 - 증자·감자의 경우 유동주식수 증가율 또는 감소율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 명시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7조
2항 12호, 13호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를 명시

- 주가(시가총액)가 액면가액의 20%(25억원)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되고 그리고 누적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해제

○ 현금배당 결정과 관련한 공시의무사항 정비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3/3/29 개정 · 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익일 공시하고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4조 2항 38호)

— 현금배당 공시후 배당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추가 (17조 1항 13호의2)

○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의 확충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3/3/29 개정 · 시행)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당일에 공시
(4조 1항 13호의2)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인 때 당일에 공시
(4조 1항 13호 나목)

- 감사보고서를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하여 공시시한 단축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 1항 13호 : 2003/3/29 개정·시행)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그 당해 감사보고서를 당일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중요정보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대상의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1항 : 2003/3/29 개정·시행)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인 경우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ETF)의 등록요건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2조의2, 12조의3 : 2003/3/28 개정, 3/29 시행)
 - 규모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100억원 이상, 발행주식수(수익증권수)가 10만주(좌) 이상
 - 유동성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지정판매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가 2사 이상일 것
 - * AP는 발행시장에서는 ETF의 설정·환매를 전담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자산의 구성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추적대상지수 구성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 이상 편입
 - * 주가지수와 순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0.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지수추적오차 발생을 최소화
 - 다만, 추적대상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지수구성 전종목을 편입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
 - * 펀드내 구성종목과 지수구성 종목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
- ETF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존속기간(신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을 것
 - * 기존펀드는 환매를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지만 ETF는 증권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환금이 가능하므로 만기가 불필요
- 추적대상지수 사용과 관련한 계약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협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경우, 협회와 지수사용허가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을 의무화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변경등록 근거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4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주권의 신주발행 또는 환매로 인하여 주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수익증권의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수량을 변경한 경우
- 변경등록예정일의 1일(매매일 기준)전까지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거래소시장과 통일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등록취소 요건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30조의2, 30조의3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자본금(신탁원본액) : 50억원 미만이 된 날부터 3월내 미해소시
 - 등록주식수(좌) : 5만주미만이 된 날로부터 3월내 미해소시
 - 주주(수익자)수 : 사업연도말 현재 100명 미만시. 다만,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외
 - 거래량 : 연간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좌)미만시. 다만,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외
 - 기타 : 증권투자회사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등록취소 예고제도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8조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의 경우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순자산액이 1개월간 계속하여 정관상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시
 -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수가 5만주 미만시
 -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수익증권수가 5만좌 미만시

○ ETF의 신고의무 부과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의 신고사항 신설 (25조의2)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증권투자회사법 55조에 의한 금전분배
 - 증권투자회사법 60조에 의한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
 - 증권투자회사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책임자(운영이사 1인) 지정 및 변경
 -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 등록법인의 신고사항 신설 (25조의4)

-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관리서류 제출
 - 등록된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 수익증권의 금전분배
 -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등록요건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2조의4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자본금 : 500억원 이상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최저자본금은 500억원
 - 분산요건 :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이고 주주수가 100명 이상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CR리츠의 경우에는 30% 이상 분산요건 적용 배제
 - 자산구성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 신설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2조 1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일반 협회등록법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되, 주식분산, 거래실적부진 요건은 적용배제
 - CR리츠의 경우 사외이사 구성요건 미적용, 일반리츠 및 CR리츠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미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요건 신설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3조 1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일반 협회등록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되, 주된 영업정지요건은 적용을 배제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로 신설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구성요건 미달시
 - * 자산구성요건 :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할 것.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일 것

-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배당요건 미달시

* 배당요건 :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배당(CR리츠는 배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취소요건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8조 5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일반 협회등록법인의 등록취소요건을 적용하되 주된 영업정지, 거래량, 분산요건은 적용을 배제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로 신설

- 자산구성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재차 미달시
- 배당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재차 미달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코스닥시장 등록제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7조 8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등록심사를 기각하고 이미 등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

- 경미한 조치(감사인 지정·변경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경우에는 질적 심사를 통해 처리

- 협회등록이 불허된 법인의 시장진입 제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4조의2 1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예비심사청구가 기각되거나 또는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법인은 3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제한

- 검찰고발·통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정정시 신규등록심사 요건 미충족의 경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3조 1항 8호의2 : 2003/6/14 개정, 6/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된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4조의2 3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제한

○ 코스닥시장 등록기준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3/9/5 개정, 2004/1/2 시행)

- 감사의견 요건을 적정으로 제한 (5조 1항 8호)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감사의견 요건을 기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 경우 제외)」에서 「적정」으로 변경

-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 도입 등 (5조 1항 2호, 6조 1항 1호·2호)

- 건실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ROE 요건)를 도입하는 등 진입요건을 개선

- 일반기업 요건 개선 :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ROE(최근사업연도말 10%) 요건 신설
- 벤처기업 요건 개선 : 자본금(5억원 이상), 경상이익 시현, ROE(최근사업연도말 5%) 요건 신설

$$*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frac{\text{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text{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 \times 100$$

○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5조 1항 : 2003/9/5 개정, 9/8 시행)

— 코스닥기업과 비공개기업과의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의 지분변동금지기간을 단축

- 1년 → 6월

* 신규등록의 경우 기존 지분변동금지요건(1년)을 유지

— 소량 지분변동의 예외적 허용

-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5%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0.1% 미만(1,000주 한도) 변동을 허용

*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수량변동금지요건을 유지

○ 상법상 소규모합병시 합병요건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5조 3항 : 2003/9/5 개정, 9/8 시행)

— 상법상 소규모합병의 경우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5% 이상 주주 포함)의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배제

- 비공개기업이 코스닥기업과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다른 비공개기업과 합병 등을 한 경우, 당해 비공개기업과 코스닥기업이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산재무제표 확정요건의 적용을 배제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 자본금변경 및 지분변동 제한 · 합병전 비공개기업과 합병한 경우 결산재무제표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배제 · 결산재무제표요건 적용배제

- 합병후 단기분할시 심사요건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15조 1항 2호 : 2003/9/5 개정, 9/8 시행)

- 기존에 비공개기업과 합병한 코스닥기업이 3년내 재차 분할하여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요건을 요구하였던 것을 상법상 소규모합병을 하여 3년내 분할하는 경우에는 일반분할 수준으로 요건 완화

기 준	개 정
<p>[합병후 3년내 분할 재등록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시 심사요건 + 지분변동 제한, 경상이익, 결산재무제표 요건 	<p>[소규모합병후 3년내 분할 재등록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변동 제한, 경상이익, 결산재무제표요건 적용배제

- 기업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관리·퇴출기능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3조 1항 : 2003/9/5 개정, 2004/1/2 시행)

- M&A 등을 통한 코스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종목 및 퇴출기준으로 경상이익 및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

- 다만, 신설요건과 유사한 영업손실·경상손실·부채비율 요건을 폐지
 -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최소주가 요건의 기능을 제고
 - 액면가의 30% → 액면가의 40% (2004/7/1 시행)
 - 관리종목으로 지정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일 상태 지속시 퇴출
- 부동산투자회사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6조 : 2003/3/29 개정·시행)
- 매분기말 자산구성요건 미달 확인시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배당요건 미달 확인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사업보고서 등에 의한 당해 사유해소 확인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 REITs 및 ETF 등록수수료 등 징수근거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등록서식3 : 2003/3/29 개정·시행)
- REITs 및 ETF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에 준하여 등록수수료를 징수
 - * 현행 코스닥기업의 자본금 대비 요율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3(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수준
 - REITs 및 ETF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에 준하여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
 - * 현행 코스닥기업의 자본금 대비 요율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3(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수준

○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등의 면제대상 확대

(유가증권 협회등록 규정 시행세칙 23조 : 2003/5/28 개정, 6/2 시행)

- 수수료 부과일 현재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포함)가 진행중인 협회 등록법인에 대한 추가·변경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를 면제
 -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에 대한 등록유지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
 - 면제되는 수수료의 종류 및 면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함
- ※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됨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16조 1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의 기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검찰통보·고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된 관리종목 지정시기 및 해제시기를 명시
 - 지정시기 : 확인 즉시
 - 해제시기 :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의 익일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3/9/5 개정, 2004/1/2 시행)

- 최근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있고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60일(매매일기준)기간 동안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연속이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16조 1항 7호의2)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차기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경상손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또는 차기사업연도에도 경상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등록취소사유 없이 60일(당해종목의 매매일기준)이 경과한 날

○ 주식시장과 ETF시장을 구분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4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ETF(등록지수펀드)는 기존 주식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유가증권이므로 코스닥시장을 주식시장과 ETF시장으로 구분

○ ETF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16조, 20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증권회사에 예탁되지 않은 ETF증권 또는 주식집단의 결제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매도호가 허용

- 신규·추가설정시 ETF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결제일까지 당해 ETF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매도호가 허용
- ETF 환매시 주식집단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환매로 교부받을 주식집단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 매도호가 허용

— 주권거래와 동일하게 ETF도 공매도의 경우 직전가 미만의 매도호가(down-tick)를 금지

- 다만, ETF 차익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주권과 동일하게 직전가 미만의 매도호가를 허용

— 대용증권에 ETF 포함

- ETF 및 주식집단(주식바스켓)의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위탁증거금으로 이용될 ETF를 대용증권에 포함

○ REITs 매매제도의 정비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조 16호, 31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REITs에도 일반 주권의 매매방식을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매매거래중단 사유 추가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배당 또는 금전의 배분을 목적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매매거래를 중단

○ 지수차익거래에 대한 개념 명시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조 6호 가목,

나목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지수차익 또는 지수비차익거래의 개념을 선물지수와 연계한 코스닥 50지수로 명시

- 종래에 차익거래 또는 비차익거래 대상 지수를 「등록종목을 기초로 하는 지수(코스닥지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코스닥50」으로 명확화
- 선물거래종목 뿐만 아니라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도 지수차익거래에 포함

-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호가가능시간 확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1조 1항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중에도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이 가능토록 하되,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는 호가제출을 제한

기 존	개 정
장개시 동시호가에 주문 (정정주문의 경우 장중호가 가능)	장개시 동시호가 및 장중에도 신규 주문제출 가능 (단, 신규 및 정정주문 모두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제한)

- 자사주 취득 호가가격 상한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1조 1항 2호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중 자사주 취득시 호가제출상한은 「주문직전 당해 종목의 당일 최고가와 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기 존	개 정
주문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	주문직전 당해 종목의 당일 최고가와 주문시점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

- 시간외대량매매방법에 의한 자사주처분 허용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1조 5항 : 2003/9/26 개정, 12/1 시행)

- 호가가능가격은 일반적 시간외대량매매와 달리 당일 종가와 그 가격으로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당일 하한가를 한도로 함)의 범위내로 함

* 일반적 시간외대량매매 호가가능가격 : 당일종가의 $\pm 7\%$

○ 자사주신탁매매관련 규제제도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9조의2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신탁매매시 자사주신탁매매거래계좌를 설정
- 자사주신탁매매시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규제 적용
 - 호가가능가격 및 협회신고 등에 관한 동일 규제 적용

○ 장개시전 시간외매매제도 도입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4조 2항 2호 :
2003/12/26 개정, 시행일 미정)

- 시간외시장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구분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 오전 7:30 ~ 8:30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 오후 3:10 ~ 4:00

○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의 가격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9조 2항 :
2003/12/26 개정, 시행일 미정)

- 전일종가를 기준
 - 호가를 하는 날에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주식분할, 액면병합되는 종목은 그날의 기준 가격
 -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은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 대량매매호가 제한 근거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조의2
2항·3항 : 2003/2/4 개정, 2/10 시행)

— 호가수량이 등록주식수의 5%를 초과하는 호가의 경우 입력할 수 없도록 함

- 단, 시간외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의 경우는 예외

○ 주식병합종목의 시초가 산정방식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업무서식5 : 2003/2/4 개정, 2/10 시행)

—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병합비율이 다른 경우, 소액주주의 병합비율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가격의 50% ~ 200%범위 내에서 동시호가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

— 주식병합과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한 경우 호가최소단위인 10원 ~ 평가가격의 200%범위 내에서 동시호가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

- * 대규모 유상증자 : 평가가격의 50% 미만으로 발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수가 당해 유상증자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ETF에 대하여도 주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을 산정

- 기준시세 : 적용일의 종가
- 사정비율 : 70%

○ 시초가 결정방법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업무서식5 : 2003/3/28 개정, 3/31 시행)

-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신규등록, 재등록 및 주식병합시), 시초가 산출시점을 장종료시에서 장개시시로 변경

	기 준	개 정
호가범위	평가가격* 대비 90%(병합시 50%) ~ 200%	(종전과 동일)
호가시간	08:00 ~ <u>15:00</u>	08:00 ~ <u>09:00</u>
시장가호가	○	×

* 평가가격 : 신규등록시 공모가격(공모시) 또는 주당순자산가치(직등록시) 등

-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MF 및 ETF), 시초가 산출시점을 장종료시에서 장개시시로 변경

	기 준	개 정
호가범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12%	(종전과 동일)
호가시간	08:00 ~ <u>15:00</u>	08:00 ~ <u>09:00</u>
시장가호가	○	(종전과 동일)

○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거래방법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조의2 : 2003/3/28 개정, 3/31 시행)

- 등록취소 종목의 경우, 정리매매기간(7일)중 접속매매방식에 의거 가격제한폭(12%, 첫날 제외)내에서 체결하던 방식을 30분 단위 동시호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격제한폭 적용을 배제

	기 준	개 정
최초매매일	가격제한폭 <u>미적용</u> 08:00 ~15:00 (동시호가방식)	가격제한폭 미적용(7일내내), 30분간격(1일13회)호가 접수후 동시호가방식으 로 매매함
2일~종료시	가격제한폭 <u>적용</u> 접속매매방식	

- 시간외매매(종가, 대량매매)시에는 시간외매매의 방법을 준용
- 시장의 임시정지, Circuit Breakers 발동후 거래재개시에는 재개시점을 기준으로 30분 단위로 동시호가방식으로 매매함. 단, 재개시점이 오후 2시 50분 이후인 경우에는 오후 3시까지의 호가를 매매체결

○ 호가가격 단위 축소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5,000원 미만의 호가단위로 5원을 추가하고, 100,000원 이상의 고가주는 100원으로 통합하여 5단계를 4단계로 축소

기 준		개 정	
주권가격	호가가격단위	주권가격	호가가격단위
10,000원 미만	10원	5,000원 미만	5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원 이상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

- 장기간 점진적 상승세에 따른 감리종목 지정(예고)요건의 삭제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 2003/7/11 개정, 8/4 시행)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등록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예고)요건을 삭제

- 감리종목 지정(예고) 회수 축소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 2003/7/11 개정, 8/4 시행)
 - 3회 → 2회

- 감리종목 지정(예고) 기준의 일관성 유지 근거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2항 : 2003/7/11 개정, 8/4 시행)
 - 액면분할, 주권병합, 감자, 증자 등으로 종가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종가를 기준으로 감리종목 지정(예고)

- 감리종목지정시 신규등록종목 및 종합주가지수대비 요건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1항 : 2003/7/11 개정, 8/4 시행)
 -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신규등록종목의 최고주가기간 기준(경과기간 적용) 신설
 - 최근 20일간 종합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종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 요건 신설

- 감리종목 지정해제요건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9조 :
2003/7/11 개정, 8/4 시행)
 -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로 변경

- 감리종목 지정(예고) 예외조건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4항 : 2003/7/11 개정, 8/4 시행)
 - 감리종목 지정(예고) 예외조건 4가지(관리종목지정, 30일 초과 매매거래정지, 감리종목 해제일로부터 5일간, 정리매매중인 종목) 중 정리매매종목만 예외조건으로 잔존시키고 나머지 요건은 폐지

- ETF 금전분배시 분배락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업무서식6 8호 : 2003/7/11 개정, 8/4 시행)
 - 등록지수펀드로서 금전의 분배를 신고한 종목은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에서 주(또는 좌)당 분배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산정

- 자사주 매매관련제도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9조의3 : 2003/10/28 개정, 12/1 시행)
 - 자사주 취득·처분을 위한 호가횟수제한 폐지
 - 장중 신규호가 가능에 따라 기존 호가횟수제한(1일 1회)을 폐지
 - 자사주 신탁매매시 호가수량 제한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호가수량 제한

○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 세분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조 2항 9호 : 2003/10/28 개정, 12/1 시행)

— 외국인 매매통계의 집계기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세분화하고 투자자분류의 사후관리를 강화

- 위탁자의 투자자분류코드 변동시 증권회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 하여 기록·유지하도록 함

기 존	개 정
외국인·외국법인 :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ID)가 있는 외국인 : 9000 · 기타 외국인 및 외국법인 : 9001

○ 대용증권 지정제외사유 추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자진등록취소신청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대용증권 지정에서 제외

○ 단일가매매 호가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2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의 매매편의 제고를 위한 호가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

- 최우선 호가 및 수량(1단계) →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포가 및 각 호가의 수량(3단계)

○ 최초 매매기준가격 산정시 평가가격 등 별도의 산정근거 마련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2 업무서식5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최초 매매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최저·최고 호가가격 또는 평가가
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별도의 산정근거를 마련

- 소액주주의 주식병합 종목에 대한 평가가격 산정시 변경·추가
등록 전에 발생한 주식분할·권리락 등을 감안하여 결정

2. 채권시장

가. 발행시장

○ 외국법인의 수탁계약서 사전심사제 도입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2조 3항 : 2003/12/15 개정·시행)

—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시,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유통시장

- 채권장내매매의 결제일 변경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3/4/8 개정, 6/1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KTS)에서의 매매분에 대해서는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 (6조 1항 단서)
 - 여타 채권매매 및 Repo 매매분은 현행과 같이 당일결제거래를 유지

- 채권의 신고매매 사유에 국고채환매거래를 추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55조 1항 5호 : 2003/5/29 개정, 6/2 시행)
 - 국고채환매거래를 「채권의 신고매매」로 할 수 있도록 함

- 국고채환매거래의 거래시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55조 2항 3호 : 2003/5/29 개정, 6/2 시행)
 - 국고채환매거래의 매매거래시간을 장개시 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로 함

- 국고채환매거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방법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55조 6항 : 2003/5/29 개정, 6/2 시행)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참가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신규신청회원의 소액채권전담회원 우선지정권 폐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43조 2항 : 2003/7/18 개정, 8/1 시행)
 - 신규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지정
 -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아닌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

- 매도호가에 대해 매도주문 대행계약 체결회원의 매도호가 우선조항 신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54조 2항 1호 : 2003/7/18 개정, 8/1 시행)
 - 소액채권의 장종료매매시 매출기관과 매도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매도대행 회원사)의 매도호가에 대하여 매도우선권 부여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시의 결제일 일부 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 1항, 84조 2항 2호 : 2003/10/8 개정, 11/1 시행)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에서 결제일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 마감일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일을 그 다음 영업일로 변경
 - 이자락조치일도 이자지급일의 직전일에서 이자지급일의 직전일 전일로 변경

- 이상호가의 입력제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4호 : 2003/10/8 개정, 12/1 시행)
 - 채권의 호가가격이 전일종가를 30% 초과(또는 미달)하는 매수(매도) 호가에 대해 호가입력을 제한

- 만기연장 가능 옵션부채권의 연부과금 납부근거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11항 : 2003/4/18 개정, 4/19 시행)
 - 「채권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의 상환잔존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상환잔존기간 중의 연부과금은 신규상장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
 - 만기연장 신청시 이를 신규상장 신청에 갈음하여 연부과금을 납부
 - * 「채권형태의 신종자본증권」 : 만기구조가 유한(30년 등)하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영구채에 준하는 만기구조를 갖는 채권」

- 연부과금은 상장기간 동안만 부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9항 : 2003/4/18 개정, 4/19 시행)
 - 연부과금 선납 채권의 상환잔존기간 중 상장폐지에 따른 기납부 연부과금 반환시 공제금액 산정대상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
 - 「상장폐지일」까지 월할 계산한 금액
 - 「상장폐지일 전일」까지 월할 계산한 금액

- 시가평가업무 중단에 따른 관련규칙 폐지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부칙 3조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채권시가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시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부칙 6조 1항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최종호가수익률의 일종인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로 변경하여 발표

- 공시대상 채권의 조정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조 및 4조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국고채권을 6개월 단위로 통합발행함에 따라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잔존기간을 조정
 - 2년 9월 ~ 3년 → 2년 7월 ~ 3년
 - 공시대상 채권의 추가 및 변경
 - 예금보험공사채권 3개월을 공시대상채권에 추가
 - 공시대상채권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년에서 15년으로 변경

-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의 도입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4조 5항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시가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
 - 협의사항
 - 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 수익률의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등

3. 선물·옵션시장

○ 기관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사후징수근거 마련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3/3/28 개정, 4/14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차익거래를 행하는 경우, 결제불이행위험이 크게 감소하므로 적격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회원 자율적으로 매매거래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징수시한은 헤지·차익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 12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76조 2항)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및 헤지·차익거래의 범위는 세칙에서 정함 (76조 4항)

-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는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4-1조 2항 6호의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로 하고, 헤지거래의 범위는 보유 주식포트폴리오의 가격하락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매도하는 매도헤지거래로 한정

○ 사후징수 추가위탁증거금의 납부 (선물·옵션 업무규정 78조 1항 :

2003/3/28 개정, 4/14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차익거래를 한 날에는 매매거래종료시 기준으로 15%의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 매매거래종료시 체크하는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는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차익거래를 행하지 아니한 날에만 체크함

○ 추가위탁증거금의 납부시한 및 결제시한의 단축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3/3/28 개정, 4/14 시행)

- 회원은 위탁자의 자금력,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 불이행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시한 및 결제시한을 각각 익일 12시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한까지 단축 가능

(78조 5항 및 89조 1항)

- 거래소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급격한 변동이 우려되는 때에는 주가지수선물 투기거래의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 5,000계약을 축소 가능 (95조 1항 1호 단서)
 - 기존 주가지수옵션 및 주식옵션의 경우 변경근거가 있음

○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결제회원 및 매매전문회원의 범위에 추가

(선물·옵션 업무규정 2조 4항 1호, 2호 및 2조 5항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증권거래소 회원은 아니지만 KOSPI 200 선물·옵션 및 주식옵션 시장에 특별히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선물업자로서,
 - 자기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결제를 자기 명의로 행하는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결제회원으로 함
 -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결제를 당해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행하는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결제회원으로 함
 - 자기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는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매매전문회원으로 함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공동결제 근거마련 (선물·옵션 업무규정 부칙 2조 1항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공동결제기간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

- 공동결제방법

-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는 매도(매수)의 결제회원이 매수(매도)의 결제회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 동시에 매도(매수)의 결제회원은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에 대해 부담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채무의 분담 근거마련

(선물·옵션 업무규정 부칙 3조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결제회원이 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가 인수하는 채무의 분담 등의 근거마련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상향 조정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49조 : 2003/2/26 개정, 3/24 시행)

- 선물·옵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고 자금력이 약한 투자자의 신중하지 못한 시장참여로 인한 결제불이행 및 과도한 투자손실발생과 극단적 단기위주의 거래로 인한 가격왜곡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인수한 채무의 분담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2항 1호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결제를 불이행한 회원이 증권거래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면,
인수한 채무의 전액을 증권거래소가 부담
 - 증권거래소의 배상기금을 사용
- 결제를 불이행한 회원이 증권거래소의 선물거래 특별참가자이면, 인
수한 채무의 전액을 선물거래소가 부담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상향조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3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500만원 → 1,500만원

4. 증권예탁·결제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계좌대체 제한사유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19조 4항 4호 : 2003/3/18 개정, 3/19 시행)

- 권리행사를 신청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계좌대체를 제한함

- 주식워런트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의 권리행사방법 규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예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권 및 대금 등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배분 (36조의4)
 - 추가연계증권의 경우에는 채권원리금과 같이 만기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예탁원이 대금 및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배분 (40조 1항 및 3항)

-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 추가연계증권의 경우, 채권과 동일하게 예탁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 피합병회사 등의 예탁지정 취소의 시기 및 취소시 유가증권 처리 방법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3/4/8 개정 · 시행)
 - 합병 등으로 인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취소로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의 예탁지정 취소시기를 주권제출만료일 익영업일로 정함 (3조의2 2항)
 - 다만, 합병회사 등의 발행유가증권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일괄예탁통지를 받는 날
 -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취소시 피합병회사 등의 주권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제출하도록 명시 (4조 1항)

- 주가연계증권의 계좌대체 제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9조 4항 4호 : 2003/4/8 개정·시행)
 - 주가연계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상환액 지급일전 2영업일간 계좌대체를 제한

-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신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4조의2 : 2003/4/8 개정·시행)
 - 예탁원 직원, 기타 예탁원이 정하는 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
 -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주총회 참석시 신분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명시

- 주식매수청구의 신청주식수 산정 기준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6조 1항 : 2003/4/8 개정·시행)
 - 선물거래대용증권 등으로 이용되는 주식수는 주식매수청구의 신청 기준인 최저 보유주식수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

- 주식워런트증권의 자동권리행사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6조의3 : 2003/4/8 개정·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자동권리행사를 정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실기주를 반환받은 고객에 대한 실기주 과실발생사실의 통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8조 4항 : 2003/4/8 개정·시행)
 -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기주 과실발생사실을 통지받은 예탁자는 실기주를 반환받은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거래소 익일결제분 결제자료의 통지시한 명시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8조 3항 1호 : 2003/6/1 개정·시행)
 - 당일결제의 경우에는 결제시한 30분전
 - 당일결제 또는 익일결제의 경우에는 결제시한 30분전

- 토요일의 비영업일 지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조 1항 3호, 29조 1항, 29조의2 1항, 29조의2 2항, 29조의3 2항 : 2003/6/1 개정·시행)
 - 익일결제 시행에 따른 금요일 채권거래분의 원활한 결제처리와 은행권의 토요일휴무 및 최근 채권거래실적이 전무함을 감안하여 토요일을 비영업일로 지정

- 익일결제분에 대한 매매승인 마감시한 연장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9조의2 2항, 29조의3 2항 : 2003/6/1 개정·시행)
 - 익일결제분에 대한 거래당일 매매확인 완료에 따른 매매승인 마감시한을 연장
 - 오후 4시 30분 → 오후 5시(토요일은 제외)

- 익일결제분에 대한 결제일 당일 처분제한 근거 보완
 -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9조의4 1항 : 2003/6/1 개정·시행)
 - 익일결제분인 경우 참가자 보유채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결제일 당일에 매도기관 보유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근거를 보완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의 확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3조 : 2003/6/20 개정, 7/1 시행)
 - 협회등록종목 중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을 대상유가증권에 포함하여 상장종목의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 상장채권의 신용등급별 제한을 폐지

- 결제거래의 영업일 기준 명료화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4조 4항 : 2003/6/20 개정, 7/1 시행)
 - 결제거래의 경우 대차거래기간인 3영업일을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

- 대차거래 단위변경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및 3항 : 15조 1항 및 3항 : 2003/6/20 개정, 7/1 시행)
 - 대차거래 신청단위 및 신청수량을 참가자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
 - 주식 : 10주 → 1주
 - 상장지수 수익증권 : 10좌 → 1좌

- 분할상환제도 도입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2조 및 23조 2호 : 2003/6/20 개정, 10/15 시행)
 - 차입자가 대차증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 분할상환의 경우 대차증권 전량을 상환한 때에 대차거래가 종료되도록 함

- 대차거래의 만료일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3조 1호 단서 : 2003/6/20 개정, 7/1 시행)
 - 대차거래기간 만료일이 예탁자계좌부의 계좌대체 제한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기간 이후로 만료일을 연기

- 대차거래의 종료사유 추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3조 5호 : 2003/6/20 개정, 7/1 시행)
 - 맞춤거래의 경우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한 거래종료를 허용

- 맞춤거래의 종료시 대차증권 및 담보물의 인도방법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24조 5항 : 2003/6/20 개정, 7/1 시행)
 - 대차증권 및 담보물의 인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증권대행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추가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2조 3호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증권대행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추가

- 증권용지에 비통일규격 증권용지 포함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2조 4호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상의 증권용지가 아닌 비통일규격의 증권용지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발행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22조의4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위탁회사가 발행대행업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발행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 매입채권과 증거금의 분리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2조 1항 5호·6호, 11조 2항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표준약관(증권업협회의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약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시장정합성을 확보
 - 매수자의 매입채권 활용에 따른 안정성 제고
 - 일일정산에 따른 증거금 부족(초과)시 매입채권의 납부(반환)대신 다른 유가증권으로 증거금을 납부(반환)하도록 하여 매입채권 활용의 안정성을 제고

- 현금증거금 운영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2조 1항 6호, 15조의2 2항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일일정산의 결과로 증거금부족 발생시 제공하는 증거금으로 유가증권 외에 현금을 추가

- 동일 당사자간 거래의 통합정산 근거 마련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11조 단서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거래건별 일일정산방식 외에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에 규정된 통합정산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동일당사자간 다수거래에 대한 통합정산 차감효과를 통한 증거금액의 최소화 및 효율적 위험관리

- 현금상환결제제도 신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13조 5항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매입채권에 갈음하여 등가의 현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결제가 불이행될 위험을 축소

- 재매매조건부채권 매매에 관한 규정 삭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buy/sell back) 거래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이를 폐지

○ 결제회원 신규가입시 결제안정기금 분담금 징수근거 신설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17조 2항 : 2003/6/20 개정·시행)

- 신규 결제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결제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안정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bullet \text{ 납부금액} = \frac{\text{최초의 매매거래 직전일까지 적립된 결제안정기금}}{\text{당해 결제회원을 제외한 총 결제회원수}}$$

○ 증권회사에 대한 결제회원 자격요건 완화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3조 1항 3호 : 2003/6/20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결제회원의 자격요건을 코스닥시장 회원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

○ 증권예탁원의 예탁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원리금 일괄수령·지급의 예외 인정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15조 2항 : 2003/10/28 개정, 11/4 시행)

- 발행회사의 부도 또는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예탁원이 예탁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예탁자 또는 고객이 예탁단기금융상품의 원리금에 관한 권리를 직접행사

○ 위·변조된 단기금융상품의 처리방법 신설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 2003/10/28 개정, 11/4 시행)

- 단기금융상품의 예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변조단기금융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단기금융상품의 표면에 위조 또는 변조의 표시를 하여 예탁자에게 반환 가능

- 예탁된 단기금융상품의 원리금 수령 불능사유 명시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7조 2항 : 2003/11/4 개정·시행)
 -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단기금융상품의 원리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여 예탁된 단기금융상품의 권리행사에 따른 업무리스크를 최소화함
 - 예탁단기금융상품 발행인의 부도 또는 지급불능
 - 기타 예탁단기금융상품의 발행인 등의 사정으로 증권예탁원이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참가자의 자격 (담보콜거래 관리업무규정 4조, 5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콜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예탁자로 제한
 - 참가자가 선임한 수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한 범위 내에서 당해 수탁기관을 참가자로 간주

- 담보콜거래의 결제방법 (담보콜거래 관리업무규정 8조 ~ 10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자금중개회사의 담보콜거래 체결내역을 통지받은 예탁원은 참가자들에게 거래자료를 확인하게 한 후 결제자료를 확정
 - 담보콜거래의 체결일에 개시결제
 - 참가자가 예탁원에 납부한 거래금액과 담보를 동시에 결제

- 담보관리방법 (담보콜거래 관리업무규정 14조, 15조, 17조, 18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담보의 대상은 현금, 상장주권, 협회등록주권, 상장채권, 수익증권 및 기업어음으로 함
 - 유가증권담보는 참가자의 예탁자계좌부상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하고, 현금담보는 자금차입자를 위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담보의 대체 및 교환을 인정

- 담보의 일일정산 (담보콜거래 관리업무규정 16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예탁원은 매 영업일 담보콜거래건별로 일일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담보부족액 또는 담보초과액을 참가자에게 통지

5. 기업공시

- 상장법인 임원의 보수 공시 (증권거래법 186조의2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

○ 외국기업의 재무정보 공시기준 완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8조 2항 : 2003/1/29 개정·시행)

— 원화표시채권(주식연계채권 제외)의 발행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추가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

- 종래에는 ① 당해 회계기준과 우리 회계기준의 차이, ② 우리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한 계정과목별 금액, ③ 우리회계기준으로 조정한 요약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였음
- 이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가증권 공모발행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경영사항 신고대상의 확대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가배당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상장법인 등이 현금배당을 결정한 경우, 이를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하여 시가배당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69조 1항 7호)

— 투자자에게 기업의 결산에 관한 자료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상장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공시시점을 앞당김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되어 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공시 (69조 1항 19호)

-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의 기준일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32조의2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대량보유·변동보고의 보고기준일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상신주의 취득, 차입·상환, 증여, 상속 등으로 주식 등의 보유비율 변동시 그 보고기준일을 규정

 -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공시방식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03조 3항 : 2003/9/13 개정·시행)
 -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은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제외
 - < 제외사항 >
 -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
 - 최근 5년간 배당사항
 - 최근 6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 주식의 분포사항
 - 직전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및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시점 조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3/9/13 개정·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신고서는 최초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의 5일 전까지 제출
- (109조 2항)

- 처분결과보고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일 또는 최종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111조 3항)

- 자기주식 매매주문 예정내용의 신고의무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06호 1항 3호, 111조 4항 3호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자기주식 매매주문 예정내용 사전 공시의무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의 사전 신고의무로 변경

- 중간배당 결의 및 배당수익율(시가배당율) 신고의무 폐지
(유가증권 상장규정 19조 1항 6호 및 2항 삭제 : 2003/3/31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상장법인 등의 신고등) 3항 7호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가배당율 공시가 의무화되고, 공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신고의무를 폐지

- 현금배당 결정과 관련한 공시의무사항 정비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3/3/29 개정·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익일 공시하고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4조 2항 38호)
 - 현금배당 공시후 배당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추가 (17조 1항 13호의2)

-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의 확충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3/3/29 개정 · 시행)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당일에 공시
(4조 1항 13호의2)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인 때 당일에 공시
(4조 1항 13호 나목)

- 감사보고서를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하여 공시시한 단축
(상장법인 공시규정 4조 1항 13호 : 2003/3/29 개정 · 시행)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그 당해 감사보고서를 당일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중요정보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대상의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1항 : 2003/3/29 개정 · 시행)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인 경우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확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03/9/23 개정 · 시행)
 -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세칙 6조의2를 삭제하여, 기공시 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에서 「기공시 내용을 변경한 모든 경우」로 확대

- 공시번복의 적용예외 대상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 : 2003/9/23 개정·시행)
 -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당해 시장에 공시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자본도입 등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 증여를 받기로 한 때

- 관계기관간 규정해석이 상이한 사항의 통일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2 1호 : 2003/9/23 개정·시행)
 -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10% 미만인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여 금감원의 해석과 통일을 기함

- 당일 공시 불이행 적용시한 변경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 : 2003/11/20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7:30~8:30)에서 전일 협상이 완료된 주문은 개장 즉시 매매체결이 가능하므로, 주요내용 공시에 따른 시장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불이행 적용시한을 앞당김
 - 공시사유발생일 익일 오전 8:00 → 7:20
 - 토요일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오전 10시까지 신고하도록 단서 추가
 - 금융감독원이 토요일 전자공시시스템 개방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

-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의 중요내용 공시시점의 명확화 (상장법인 공시 규정 시행세칙 9조 2항 1호 : 2003/11/20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1시간 동안에는 중요내용의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완전하게 전달될 수 없으므로, 매매거래 재개시간을 정규시장 개장 1시간 이후로 연장
 - 대형주문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특성상,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
 - 「공시 등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그 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간 이전인 경우, 공시 등이 「정규시장매매거래개시시간」에 된 것으로 변경

- 대상정보의 명확화 (공정공시 운영기준 3조 1항 : 2003/3/13 개정, 4/1 시행)
 - 기간 개념 도입
 -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과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의 대상기간을 3년으로 한정
 - 장래사업의 경영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존 신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 등 내용에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을 추가하고 「기타 조항」을 삭제

- 홍보성 공시 방지를 위한 규정 보완 (공정공시 운영기준 3조 1항, 2항, 3항 : 2003/3/13 개정, 4/1 시행)
 -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공시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 의무화

-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예상효과」를 기재
-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시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
- 영업실적 공시시 비교수치 기재 의무화
- 전년 동기 및 전기의 실적을 병행 기재

○ 공정공시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공정공시 운영기준 : 2003/3/13 개정, 4/1 시행)

-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에서 「정보제공대상자」로 재분류 (5조 2항)
 - 다만, 이사회 구성원인 경우는 임원으로 분류되어 제공자에 속하게 됨
- 보도자료 배포시 「엠바고」 관련 조항을 삭제 (7조 5항)
 - 보도자료 배포시 공정공시의무를 부여

○ 상장법인의 업무부담 경감 (공정공시 운영기준 9조 2장 5호, 5의2 :

2003/3/13 개정, 4/1 시행)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출계약 관련 정보제공시 비밀유지 동의서 면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정보제공시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의 비밀유지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종전에는 모든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음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9조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인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수시공시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를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 부동산 자산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등

○ 현금배당 결정 관련 공시의무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7호 라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의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하고,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협회등록법인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 현금배당 관련 공시변경 기준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23조 5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현금배당 공시후 주당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으로 간주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감사보고서의 공시시한 단축 및 공시사항 추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시한을 단축
-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포함)인 경우 또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자본전액 잠식 포함)인 경우는 해당사실을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
 - 종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포함)시 당해 기업에 조회공시 후 이를 공시하였음

○ 일반등록기업의 공시번복 적용 면제대상 확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이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포함)이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인 경우를 공시번복 적용 면제사항에 추가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일반등록기업 공시번복 면제사유 이외의 다음 사항을 적용면제 대상으로 추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7호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부도,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

○ 매매거래 정지사유 확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0조 1항 7호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등록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60분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의 단축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2항 : 2003/7/11 개정, 7/21 시행)

— 기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공표하게 되어 있는 2년간의 해당 사실 공표기간을 1월간으로 단축

- 다만, 불성실공시 지정 2회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해당 사실을 불성실공시법인 최초지정일로부터 2년간 공표하는 기존 시장관리 조치사항은 유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7항 : 2003/7/11 개정, 7/21 시행)

— 공시서식 신설을 통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구체화

<공시서식의 내용>

- 신청취지
- 신청이유

가.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의 근거규정

나. 불성실공시지정 예고 관련 사실관계

다. 당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논거 또는 당해 사실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논거

-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

II. 증권산업

1. 증권회사

가. 진입규제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1-10조, 별표3 : 2003/3/6 개정·시행)
 - 국내지점 및 현지법인 신설시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본국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도 허가요건으로 반영
 - 국내지점 신설허가시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 적용

나. 영업·상품규제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영업정지
(증권거래법 57조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금감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3 6호·7호 : 2003/2/24 개정·시행)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가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 또는 이러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를 유가증권에 추가
 - 유가증권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제한 폐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36조의2 1항 3호 : 2003/2/24 개정·시행)
 - 기존에 일정비율 이상을 수익증권 또는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에 관한 제한을 폐지

- 매매중개 증권회사의 거래대상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27 6항 : 2003/2/24 개정·시행)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매매의 중개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을 종전에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기관투자자 등으로 확대

- 지정 유가증권의 범위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조의3 : 2003/3/10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6호 및 7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를 증권거래법시행령 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명시

-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의 거래대상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 규정 7-1조, 7-2조, 7-3조 및 7-4조 : 2003/3/6 개정·시행)
 -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의 채권매매 중개대상법인을 종전의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자자 등으로 확대

- 유가증권 월간거래내용 등의 통지방식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4-19조 : 2003/3/6 개정·시행)
 - 오프라인 고객의 신청 등에 의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를 허용
 - 전자우편에 의한 매매체결내역 통보는 이미 허용

- 주식연계증권 등 신종증권 발행내역의 보고서식 마련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의2 : 2003/3/6 개정·시행)
 - 주식연계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사의 동 증권 발행내역을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항목에 추가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 서식 개편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2, 별지 1호 서식 : 2003/3/6 개정·시행)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에 따른 계정과목 마련
 - 연결재무정보 보고서식 마련 등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 서식 개편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서식 : 2003/4/11 개정, 4/16 시행)
 - 경영실태평가 부분의 개편내용 반영
 -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국내 및 해외자산 보유현황 보고서식 마련

-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호
서식 및 별표12 : 2003/11/19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의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중 (제 8호) 증권회사와 관련된 개정사항과 추가연계상품에 대한 재무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변경
 - 파생금융거래의 규모증가 및 상품다양화에 따라 업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

-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부담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5-13조 : 2003/12/31 개정·시행)
 - 분기별로 별도 보고하던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의 항목으로 편입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점포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35조의13(영업보고서) 8호와 관련 사항
 - 매월 협회에 보고되는 「회원사 현황」의 서식과 동일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보완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과 일치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중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을 보완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2002년 12월 개정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일치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작성기준이 되는 기재상의 주의를 전반적으로 보완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작성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6-2조의2 : 2003/2/7 개정, 4/1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을 의무화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할 필수사항을 협회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내부통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보수지급 제외대상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1조 : 2003/2/7 개정, 3/1 시행)
 - 보수지급 제외 및 환수가능 범위를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비상담 약정까지 확대·적용
 - 증권회사는 상담계좌에서 발생한 약정 중 상담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부문은 보수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전담투자상담사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 일반계좌에서 임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실현한 약정에 대하여는 보수가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개선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상향조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3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500만원 → 1,500만원

- 추가위탁증거금의 납부시한 및 결제시한의 단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3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고객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시한 및 결제시한을 각각 다음날 12시 이내에서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한까지 단축 가능함

-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6
외화증권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외국에 상장된 뮤추얼펀드 등으로 확대
 - 일반투자자의 사채권 및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안전 확보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 추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IV.5 : 2003/7/4 개정·시행)
 -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주식매수선택권 총부여 현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 연중(분기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및 취소

- 투자일임계약의 최소계약기간 설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19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투자일임고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일임계약의 최소 계약기간을 6월로 제한

○ 금융자산관리사(FP)의 선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1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증권회사는 FP에 대한 주요경력 및 제재내역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투자목적에 적합한 FP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가 FP를 교체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제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6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
 - 증권회사 계열사의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및 기업어음 편입 금지
 - 비상장·비등록 계열회사 주권의 편입금지
 - 증권회사가 5% 이상 보유 중인 주권의 편입금지(뮤추얼펀드 제외)
 - 증권회사가 인수회사로서 일반청약자에게 부여한 풋옵션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는 주권의 편입금지
 - 고객의 사전신청이 없는 유가증권의 청약금지 및 인수유가증권 중 미청약·미배정된 잔여주식에 대한 편입금지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의 독립성 확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에 관한 규정 2-27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담당부서는 기업금융 관련부서로부터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작성의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6편 보칙
6-2조의3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FP가 법규 및 회사방침에 부합하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

- 예탁재산의 운용전략, 운용기준, 의사결정과정 및 의사결정기구
- 증권회사 고유재산과 예탁재산 분리운용을 위한 통제장치
- FP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물
적·인적 체계 확립

○ ETF를 신용공여대상종목에 추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별표5 신용거래약관 : 2003/1/8 개정·시행)

— 상장지수투자신탁(ETF)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서의 신용거래를 허용

○ 유가증권의 월간거래내용 등의 통지방식 개선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3/5/6 개정·시행)

— 오프라인 고객의 동의나 신청에 의한 경우 전자우편(E-Mail)등 전
자통신방법으로 월간 거래내용을 통지

- <별표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12조 1항 5호)
- <별표2>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13조 3항 6호)
- <별표4> 증권저축약관 (10조의2 1항 6호)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의 미수위탁자에 대한 수탁의 제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2003/11/20 개정, 12/1 시행)
 - 증권거래소에 「장개시전 시간외시장」(7:30~8:30)이 개설됨에 따라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동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수탁제한 조항을 신설
 - 미수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주문은 T+3일 오전 동시호가(8:00~9:00)에 처리되므로,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계좌에 대한 수탁을 제한하여 임의상환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제거
 - 다만, 미수정리를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되어 결제이행이 확실한 위탁자로부터의 주문수탁의 경우에는 예외인정

- 증권예탁원의 기관간 RP 환매서비스 개선에 따른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8 1조 : 2003/12/15 개정, 2004/1/1 시행)
 - 동일 거래당사자간의 여러 건의 거래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개별거래에 한정된 기관간 RP 개념을 단일거래가 포함되도록 확대

- FP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운용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1조의2 : 2003/6/17 개정·시행)
 -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FP)에게 기존의 투자자문업무(자문형 Wrap Account)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업무(일임형 Wrap Account) 수행도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
 - 다만,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 필요

다. 재무건전성규제

○ 증권회사 고유재산의 운용위탁에 관한 규제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63조의2 : 2003/1/3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수익자 또는 주주가 당해 증권회사 1인인 사모증권투자신탁 또는 사모증권투자회사의 형태로 하고,
 - 자산운용목적·운용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 자산운용업자 선정기준·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 1인 사모증권투자신탁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비율 산정기준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20조 : 2003/1/3 개정·시행)

- 수익자 또는 주주가 증권회사 1인인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개별자산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비율을 산정

○ 전환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증권업 감독규정 2-52조 : 2003/3/6 개정, 2003/2/28 시행)

- 금감위 의결을 통해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을 연장

-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시장위험액 산정방식의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18조 : 2003/3/6 개정 · 시행)

- ETF와 주가지수선물 또는 ETF와 주식바스켓간의 차익거래시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위험액으로 설정

- 기존 주가지수선물과 주식바스켓간의 차익거래시 시장위험액 산출과 동일한 방식

-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5-72조, 5-73조 : 2003/3/6 개정 · 시행)

기 존	개 정
·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권, 채권, DR, 수익증권	·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를 추가
·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좌 동>
투자 불가	· 외국기업이 공모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사채권(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 국내기업의 해외발행 CB, BW, EB	· 국내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일반 사채권을 추가
· 외국기업이 발행한 CP	· 외국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CP로 한정

- 증권회사의 예탁증권담보대출 규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5-20조 : 2003/3/6 개정 · 시행)

-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유가증권의 1월 이상 예탁요건 삭제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5-63조 : 2003/3/6 개정·시행)
 - 투자일임계약 재산의 30% 이상을 투자적격등급미만채권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 담보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5-20조 2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에 포함
 -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

-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가격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 (증권업 감독규정 5-21조 1항·2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환매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ETF)의 경우에는 상장주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
 - 수익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기준가격으로 함

-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조정 (증권업 감독규정 2-13조 : 2003/4/16 개정·시행)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의 미실현평가이익을 미실현평가손실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차감
 -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해외채권을 차감항목에서 삭제

○ 투기적인 매도옵션에 대한 위험가중 (증권업 감독규정 2-22조 : 2003/4/16 개정·시행)

— 투기적인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기초자산 해당위험값의 일정률을 가산하되, 콜옵션과 풋옵션의 위험가산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함

*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옵션 :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가와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액에 해당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옵션

— 매도옵션을 취급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옵션위험액 산정시 간편법의 사용을 금지

○ 종금합병증권사 여신관련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2-50조 : 2003/4/16 개정·시행)

— 종금계정 운용자산의 범위를 종전 종금법상 신용공여에서 지급준비자산(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및 일부 예금·예치금(CD, MMDA, MMF, 금융어음 등)까지 확대

○ 경영실태평가 부문의 개편 (증권업 감독규정 2-31조 2항 : 2003/4/16 개정, 6/30 시행)

— 증권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재무건전성 부문중 일부항목을 자본적정성 부분으로 조정·흡수하고 수익성부분을 확대·신설

-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소유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2-8조 : 2003/11/19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인수영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3개월간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삭제

- 증권회사간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영업용순자본 인정
 - (증권업 감독규정 2-7조 : 2003/11/19 개정·시행)
 - 증권회사간 합병(영업전부의 양수도 포함)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시장위험액을 부과

- 채권매매결제일 변경에 따른 회계상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설정 면제
 - (증권업 감독규정 2-5조 : 2003/11/19 개정·시행)
 -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회계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법의 합리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3/12/31 개정·시행)
 - 기초위험액 산정시 경영환경 등의 급변에 대한 예외 인정 (2-25조 2항)
 - 영업양수도 또는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위험의 대폭적인 감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기초위험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으로서 기존에는 과거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위험액 미산정 근거의 명확화 (2-24조 1항)

- 대손충당금은 미래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영업용순자본에 차감(비용처리)되어 있으므로, 위험산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별도예치금 예치기관의 운용대상 금융상품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3-3조 : 2003/12/31 개정 · 시행)

- 별도예치금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의 운용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자보호법 이외에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원금이 보호되는 금융상품으로 확대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수수료 배분가능 대상 명확화

(증권업 감독규정 4-32조 2호 : 2003/12/31 개정 · 시행)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이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는 동일 사업체의 범위에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도 포함

○ 예탁증권담보대출 담보유가증권의 범위에 ELS 포함

(증권업 감독규정 5-20조 2항 : 2003/12/31 개정 · 시행)

- 공모로 발행된 추가연계증권(ELS)을 예탁증권담보대출시의 담보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

-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시장위험액 산정방식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5조 : 2003/3/6 개정·시행)
 - ETF와 주가지수선물 또는 ETF와 주식바스켓간의 차익거래시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위험액으로 설정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부여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 별표7 : 2003/4/11 개정, 4/16 시행)
 - <별표8>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의 적용근거를 마련

- 계량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실시 근거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4조 6항 : 2003/4/11 개정, 4/16 시행)
 - 계량평가등급의 2등급 이상 악화, 2분기 연속 악화 등의 경우에는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

-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자산운용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0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재산운용을 위해 고객에게 투자일임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자산운용대상 또는 자산운용금지대상 유가증권 지정
 -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여부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에 대한 투자여부

-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여부
- 유가증권의 청약여부 등

○ 시장가치 평가방법의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7조
1항 2호 : 2003/12/15 개정, 2004/1/1 시행)

— 채권평가기관 중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평가

- 기존에는 협회규칙에서 정한 방법 또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
는 가격을 기초로 평가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증권거래법 54조의6 2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
도록 의무화함

○ 수수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2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고객예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매실적과 연계
된 수수료의 징수금지

— 예탁재산 증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증가시켜 받는 행위는 성과보수
로 간주하여 금지

2. 자산운용회사

가. 진입규제

- 간접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 마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간접투자자로 정의
 - 간접투자자에 해당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음

- 투자회사 등록,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 관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조, 41조 1항, 43조 3항, 55조, 128조 2항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등록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

나. 영업·상품규제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설정·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조, 28조, 55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을 설정·운용
 -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

- 1인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의 분리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37조의2 : 2003/1/3 개정·시행)
 - 투신운용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수익자가 1인인 투자신탁(사모단독투자신탁 또는 공모단독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 허용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39조의2 : 2003/1/3 개정·시행)
 -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에 대해 유가증권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 다만, 부도·워크아웃채권, 관리종목, 비상장·비등록주식 기타 즉시 처분이 곤란한 유가증권은 납입대상 유가증권에서 제외

-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보고서 제출 허용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92조 : 2003/10/1 개정·시행)
 - 위탁회사가 금감위에 제출하는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1인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의 분리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13조의2 : 2003/1/3 개정·시행)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주주가 1인인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

- 사모증권투자회사와 공모증권투자회사간의 운용실적 구분 공시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22조 : 2003/1/3 개정·시행)
 - 투자신탁협회가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을 공시할 경우 사모증권투자회사와 공모증권투자회사를 구분하여 공시

-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보고서 제출 허용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32조의2 : 2003/10/1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금감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방식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매분기 영업보고서 및 매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다. 재무건전성규제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2조, 69조, 77조, 87조 ~ 92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장내·
외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
 -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제도, 투자회사에 법인이
사제도를 도입
 -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을 설정
하여 간접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

-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업무시 환매가격 산정방식 관련규정 삭제
(증권업 감독규정 5-35조 3항 삭제 : 2003/12/31 개정·시행)
 -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업무 영위시 환매수·도 가격산정방식을 동
일한 내용의 증권업협회 표준약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의 규정을 삭제

- 단독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간 자전거래의 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3조 : 2003/1/3 개정·시행)
 - 수익자가 1인인 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간 유가증권의 자전거래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사모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간의 운용실적 구분 공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57조 : 2003/1/3 개정·시행)
 -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을 공시할 경우 사모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을 구분하여 공시

- 위탁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30조 3항 : 2003/3/6 개정·시행)
 - 위탁회사에 대한 계량평가 주기를 기존의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

- 현대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 축소기한 연장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부칙 2조 : 2003/3/6 개정·시행)
 - 현대투자신탁운용(주) 신탁재산의 연계대출 잔액 축소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4년 2월 29일로 연장
 - 모회사인 현대투자신탁증권(주)의 외자유치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 연계대출 잔액의 축소한도는 종전기준(1998년 6월말 잔액의 31%인 9,594억원 이내)을 유지

- 자사주투자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1항 ~ 3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투자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경우에도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매매방법제한 등을 준용

- 다만 신탁방식의 경우 취득·처분신고 주식수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1일 매매수량 제한은 주권상장법인 등 발행주식 총수의 1% (직접 취득·처분시 주문가능한 최고한도) 이내의 기준을 적용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4항 1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사주 취득·처분후 1월간 처분·취득을 금지
 - 투자신탁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취득시의 금지기간(취득 후 6개월간 처분 금지 및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금지)을 단축하여 적용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초과시의 매수운용금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4항 2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매수운용을 금지
 - 한도초과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사주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위탁회사에 한도초과사실을 통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116조 3항)

○ 자사주 신탁재산의 운용범위 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4항 3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 취득을 위한 상품 취지에 맞도록 신탁재산의 운용범위를 제한
 - 자사주,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및 기타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을 금지

-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계량평가항목 조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별지 5호, 6호 : 2003/3/6 개정·시행)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 자본유지비율 등 3개 항목을 폐지하는 한편 총자산 순이익률 등 3개 항목의 산식을 변경

- 계량평가항목 조정에 따른 관련항목 조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 2003/3/6 개정·시행)
 - 계량평가항목의 조정에 따라 비계량평가항목을 일부 조정 (별지 5호)
 - 계량 및 비계량평가항목이 조정된 신탁재산운용의 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정의를 변경 (별지 7호)

3. 투자자문회사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자문·일임대상 확대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145조 ~ 147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투자자문업의 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일임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겸업제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
 - 종래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규정을 이관

III. 증권행정감독

1. 법적규제기관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영업정지

(증권거래법 57조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금감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증권거래법 188조의6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
-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내용을 정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4조, 65조, 75조, 98조, 117조, 145조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금감위의 조치내용 중 「위법내용의 공표요구」의 행정조치를 「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규제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7-3조 : 2003/12/31 개정·시행)

-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의 업무규정 제·개정을 감독원장 승인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변경

○ 금융주력자로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실시 범위 명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3/3/6 개정·시행)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을 제출한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법,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검사범위>

- 전환대상자가 제출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조건 등의 이행 상황 확인 (47조의2 1호)
- 전환대상자의 재무변동상황 및 금융거래 내역 (47조의2 2호)

○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3/9/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02/4/27 개정, 7/27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5개 항목이 추가되고, 과징금 부과비율이 종전 일률적으로 10%이던 것이 20%, 10%, 2%로 다양화됨에 따라 단계별 부과비율 표시방식을 변경

- 은행법 개정(2002/4/27 개정, 7/27 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2/8/21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15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

- 기관경고시 대표자에 대한 제재의제 폐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2조 1항 : 2003/9/13 개정·시행)
 -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제재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제재의제」를 폐지
 - 제재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 5조 및 18조에 의거 대표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조치

-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3/3/6 개정·시행)
 -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계획 사전예고제를 확대 (17조)
 - 기존 종합검사 실시계획 「사전예고제」를 금융기관의 자체 시정기능 제고를 위해 부문검사시에도 확대 실시
 -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이 검사서의 배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39조의1)

-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을 규정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5조 1항 3호 : 2003/3/19 개정·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율을 발행가액 총액의 0.9/10,000로 명시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유가증권의 발행분담
금율을 정함

○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추가연계증권에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5조 1항 : 2003/12/31 개정,
2004/1/1 시행)

- 기존 추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 요율인 발행가액 총액의 0.9/10,000
을 면제

○ 위반횟수, 위반금액 등을 감안한 과징금의 차등 부과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2 : 2003/8/27 개정·시행)

- 위반횟수, 위반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비계량
적 위반행위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위반횟수 및 금액을 추가

- 위반행위의 횟수 : 10회 이상은 「상」, 3~9회는 「중」, 3회 미
만은 「하」

- 수시공시사항 중 계량화가 가능한 위반행위 : 위반금액의 비율이
4배 이상은 「상」, 2~4배는 「중」, 2배 미만은 「하」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자산총액 대비 위반금액 비율이 5% 이
상은 「상」, 1~5%는 「중」, 1% 미만은 「하」

- 위반정도의 판단요소 중 하나인 추가변동률을 상승시 뿐만 아니라
하락시의 경우도 감안하도록 절대값으로 변경

- 추가변동률 = |(최고주가/최저주가) - 동일업종 지수변동률|

○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Ⅱ.라 : 2003/8/27 개정·시행)

-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부과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 대신 예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대상금액으로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Ⅲ.1.나, 2.나 : 2003/8/27 개정·시행)

- 법인의 이사 등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상의 신고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위반정도를 감안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의 경우

	기 존	개 정
법인의 이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	3천만원	5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
법인의 이사가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1천만원	2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

•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의 경우

	기 존	개 정
법인의 이사	3천만원	5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
신고자의 특별관계자 및 그 대리인	1천만원	2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

○ 적용률 범위의 확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IV.나 : 2003/8/27 개정·시행)

— 비계량적 위반사항(수시공시 위반 등)에 대한 적용률이 지나치게 높고 경직되어 있으므로 동 적용률의 범위를 확대

• 50/100 ~ 100/100 → 20/100 ~ 100/100

• 다만, 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적용률을 적용

— 법취지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 예정금액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중한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적용률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조정기준	조정범위
상향 조정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단계
	다수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단계
하향 조정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1단계
	부도발생,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	2단계

• 1단계는 계량적 위반사항의 경우 10/100,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경우 20/100 임

○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감경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V.1.나 : 2003/8/27 개정·시행)

—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한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경하던 것을 위반일수에 따라 감경비율을 차등적용

시정일수	3일 이내	4 ~ 6일	7 ~ 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2. 자율규제기관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유형 신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92조 1항 11호,
2항 : 2003/9/26 개정, 9/29 시행)
 - 취득·처분의사가 없는 통정·가장매매를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추가

- 회원제재 등 관련사항 정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3/9/26 개정,
9/29 시행)
 - 임직원에 대한 문책처분요구의 유형에서 경고 및 주의를 삭제
(97조 3항, 98조 2항)
 - 회원제재에 대한 재심처리기간을 기존 2월에서 1월로 단축 (99조 2항)

- 신규신청회원의 소액채권전담회원 우선지정권 폐지 (증권거래소 업무
규정 시행세칙 43조 2항 : 2003/7/18 개정, 8/1 시행)
 - 신규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지정

-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아닌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액 채권전담회원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
-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요구·지원 및 공정거래질서 계도활동 근거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90조의2 및 90조의3 : 2003/8/20 개정, 8/25 시행)
- 거래소가 회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출·조치결과 등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제시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거래소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원, 기관투자자 등에 대하여 출장, 소집교육, 공한발송 등의 방법으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비위행위 조회업무의 전산화근거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3조 : 2003/2/7 개정, 3/1 시행)
- 증권회사는 종업원 채용시 채용예정자의 비위행위 경력 등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하므로, 동 업무를 전자통신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증권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

○ 제재양정기준 개선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11 :

2003/2/7 개정, 3/1 시행)

— 제재양정기준 중 전담투자상담사의 상담계좌와 일반계좌 허위분류 및 관리계좌 변칙등록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변경

- 기존 「위규행위로 수탁한 약정금액」에서 투자상담사가 당해 위규행위 결과 「회사로부터 추가지급 받은 보수」로 변경

※ 등록전문인력 제재양정기준

【상담계좌와 일반계좌의 허위분류】

— 위규내용

일반계좌를 상담계좌로 허위분류하거나 상담계좌 중 상담행위의 수반없이 단순 매매주문의 수탁행위만 발생한 주문을 상담행위가 수반된 주문으로 허위 분류하는 행위

— 제재양정

허위분류결과 추가로 수취한 보수	협회양정기준 (재등록 거부기간)
4천만원 이상	등록취소 (1년)
2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4월)
1천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3월)
1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2월)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월)
5백만원 미만	경고

【관리계좌 변칙등록】

— 위규내용

일반직원 또는 다른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직원 또는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

－ 제재양정

변칙등록결과 추가로 수취한 보수	협회양정기준 (재등록거부기간)
4천만원 이상	등록취소 (1년)
2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4월)
1천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3월)
1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2월)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월)
5백만원 미만	경고

- 제재내역 조회절차 및 방법 개선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9조 : 2003/3/6 개정, 4/1 시행)

－ 조회절차

-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관리 직원 또는 관리예정 직원의 제재내역 열람을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 증권회사는 당해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재내역 통보를 협회에 요청
- 협회는 제재내역을 당해 증권회사에 통보하고, 증권회사는 협회의 통보내용을 신청 고객에게 통지

－ 열람신청 가능자 등의 제한

- 「제재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를 당해 증권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으로 한정
- 「조회대상자」는 신청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신청인의 계좌 관리직원 또는 관리예정 직원으로 국한
- 무분별한 조회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방법을 서면으로 한정

○ 통지대상 위규행위 및 통지내용 명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0조 2항 : 2003/3/6 개정, 4/1 시행)

—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은 다음 행위와 관련된 견책 이상의 제재내역 및 위규내용

-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 고객예탁재산 및 증권회사 재산의 횡령 및 유용
- 고객에 대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및 손실보전
- 고객 매매주문동향 등의 부당한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 허위사실 또는 풍설의 유포 등

— 통지대상의 제외

- 주의 등 계도성 차원의 제재와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에 대한 제재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제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징계면직은 10년, 정직은 5년, 감봉 및 견책은 3년

○ 제재내역 공개에 대한 증권회사 직원의 동의 및 정정신청권 부여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1조 : 2003/3/6 개정, 4/1 시행)

— 제재내역 통보는 당해 직원이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

-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

- 증권회사 및 당해 직원에 대해 협회통보 제재내역에 대한 정정신청 권을 부여
 - 협회는 정정여부 및 정정내용을 당해 증권회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의 채용제한 범위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4조 3항 : 2003/7/22 개정, 9/1 시행)
 -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응시제한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제한 대상자의 범위에 추가

- 증권회사의 직원제재내역 보고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7조 1항 : 2003/7/22 개정, 9/1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해 소속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동 사법적 제재내역을 증권업협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비위행위 조회제도 활성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9조 3항 : 2003/7/22 개정, 9/1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비위행위 제재내역 조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응시제한기간의 신축성 부여 (운용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 2003/6/17 개정·시행)
 -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응시제한기간을 「3년」에서 「3년의 범위 내」로 완화

IV.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1. 기업경영감시

-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공시위반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부과

(증권거래법 14조 1항 1호의2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킴

-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

(증권거래법 191조의19 1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채무이행 보증을 하지 못함

-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의2 및 2조의3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담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

- 동일 감사인에 의한 6년을 초과한 감사의 금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조의2 4항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원칙적으로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없음
 - 예외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모기업과의 관계상 연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을 허용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 작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조의2 및 14조의2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을 포함
 -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8년간 보존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제재완화 및 불이익한 대우의 금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조의3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회사의 회계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

○ 감사인의 수임제한규제 완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2003/6/30 개정·시행)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구분되던 감사업무 수임제한을 폐지 (<별표> 삭제)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과 감사반에게도 감사업무 기회를 확대

— 다만,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종전과 동일 (4조)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중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수행 가능
- 대형 금융기관의 종류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의 추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7조 : 2003/1/3 개정·시행)

—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에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에도 다음 회사를 추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의 직접통제 하에 있고,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회계감사보다 더 엄격하게 자산·부채를 실사하므로 외부감사를 받을 실익이 없음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한 회사, 금감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및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등
 - * 현실을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관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 구체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0조 7항 : 2003/1/3 개정·시행)

— 감사인지정 대상이 된 회사 및 당해 지정감사인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를 구체화

-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외감법시행령 1조의3(지배·종속관계)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 방지방안 보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1조 1항 5호 : 2003/1/3 개정·시행)

—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 감사인에 대

하여 감사보수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감사인의 부당교체 사유에 추가

○ 감사인 지정 및 공개감사적격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감사인 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의 확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호 및 부칙 : 2003/1/3 개정, 2004/4/1 부터 적용)

— 감리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을 기존 「최근 1개 사업연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하여 감리결과 조치점수 반영의 합리성을 제고

- 최근사업연도부터 가중치를 각각 50%, 30%, 20%씩 부여
- 점수산정대상기간을 2003년도에는 1년, 2004년도에는 2년, 2005년도에는 3년으로 단계적 확대

○ 감사인의 감사계약체결 보고기한 단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6조 2항 : 2003/1/3 개정·시행)

— 감사인의 증선위에 대한 감사계약체결 보고시기를 기존 「익월 10일 까지」에서 「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하여 감사계약체결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

○ 감사보고서 등의 문서제출방법 명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6조 4항 : 2003/1/3 개정·시행)

—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

- 감사보고서의 중복제출 문제 개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6조 5항 : 2003/1/3 개정 · 시행)
 - 증권관계법규에 의하여 감사보고서가 제출 · 공시된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보고서의 중복제출을 면제
 - 외감법 : 주주총회후 2주일내에 감사보고서 제출
 - 증권거래법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공시하며, 주주총회 1주일전에 제출하는 감사종료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나 공시대상은 아님

-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신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4조의2 : 2003/4/8 개정 · 시행)
 - 예탁원 직원, 기타 예탁원이 정하는 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
 -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주총회 참석시 신분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명시

2. 지원 · 관리제도

-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을 신고 의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83조 3항 7호 : 2003/2/24 개정 · 시행)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이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가배당율에 의하여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상장법인 등의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요건 폐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7조 1항 : 2003/1/29 개정·시행)

— 이사회결의일 전일 주가에 따라 시가발행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가발행의 자율성을 제고

- 종전에는 공모가액 결정보다 상당기간 앞선 이사회결의일 전일에 산정한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시가발행을 허용

○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만기해지절차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3조, 114조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등이 만기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보완

○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의 신규 취득신고서 제출 허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05조 1항 ~ 3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이라도 신규의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기간 종료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주식의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6조 1항 : 2003/9/13 개정·시행)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시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발생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중간배당 관련금액 등을 가감 조정

○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공시방식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03조 3항 : 2003/9/13 개정·시행)

-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은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제외

< 제외사항 >

-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
- 최근 5년간 배당사항
- 최근 6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 주식의 분포사항
- 직전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 자기주식 취득한도초과 사실의 통보의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6조 3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탁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함

- 자사주투자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1항 ~ 3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투자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경우에도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매매방법제한 등을 준용
 - 다만 신탁방식의 경우 취득·처분신고 주식수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1일 매매수량 제한은 주권상장법인 등 발행주식 총수의 1% (직접 취득·처분시 주문가능한 최고한도) 이내의 기준을 적용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4항 1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사주 취득·처분후 1월간 처분·취득을 금지
 - 투자신탁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취득시의 금지기간(취득후 6개월간 처분 금지 및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금지)을 단축하여 적용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초과시의 매수운용금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48조의2 4항 2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매수운용을 금지
 - 한도초과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사주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위탁회사에 한도초과사실을 통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116조 3항)

○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신탁업 감독규정 12조
의2 2항, 3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시에도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매매방법제한 등을 준용

- 증권거래소 등이 시장안정 유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1일 매수주문수량을 확대하여 취득 가능
- 정규시장에서의 매도호가범위, 1일 매도주문수량, 매도주문 위탁 증권회사의 제한, 매도주문수량의 주문전일 신고
-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처분 및 ECN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시에도 매도수량 및 매도호가 제한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 및 자산운용범위의 제한 (신탁업 감독규정 12조
의2 4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 취득 후 1월간 처분금지, 처분 후 1월간 취득금지
- 위탁자로부터 자사주 취득금액한도 초과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자사주 취득금지
- 자사주 및 현금성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금지

V.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2조 5호 : 2003/1/3 개정·시행)
 -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하는 부실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수자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면제

- 부실기업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정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2조 2호 : 2003/1/3 개정·시행)
 - 부실기업 지원방식이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매수관련 조항을 삭제
 - 기존에는 「채권은행단의 금융지원 등 특혜를 받은 인수자가 부실기업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면제하였으나,
 - 현재 채권은행단은 인수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신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

-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정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2조 6호 : 2003/1/3 개정·시행)
 -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의한 엄격한 사후관리에서 자율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매수관련 조항을 삭제

- 기존에는 채권은행이 위탁경영관리 기업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감독규정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에 대해 공개매수를 면제하였으나,
-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으로, 채권은행의 위탁경영관리가 은행의 자율관리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

VI. 기타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87조의4 :

2003/5/10 개정 · 시행)

-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저축금액의 60% 이상을 상장 또는 등록 주식 등에 투자하고 저축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 1인당 8천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1항 : 2003/12/30 개정)

-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

-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05/1/1 시행)

-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04/1/1 시행)

○ 신탁회사의 자금운용 대상유가증권의 범위확대

(신탁업법 시행규칙 6조 7호 : 2003/4/2 개정 · 시행)

- 신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증권거래법시행령상의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 또는 이러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를 추가

- 증권거래법시행령 2조의3 6호 및 7호의 개정(2003. 2. 24) 사항 반영

- 과태료 징수절차 변경 (신탁업법 시행규칙 9조 : 2003/4/2 개정 · 시행)
 - 신탁업법시행령 2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4항에 의한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변경
 -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의 결과반영 (증권업 감독규정 : 2003/3/6 개정 · 시행)
 - 위험상당치 → 해당위험값
 - 부외거래 → 장부외거래
 - 시스템 트레이딩 → 시스템 매매
 - 잔고 → 잔액/잔량

-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의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 2003/11/19 개정 · 시행)

기 존	개 정	관련 규정
듀레이션	가중평균만기(duration)	2-19조
BIS	국제결제은행(BIS)	3-3조
CD	양도성예금증서(CD)	3-3조
M&A	기업인수 및 합병	4-16조
인센티브	성과보수	4-20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4-48조
딜러	자기매매업자	5-26조

- 일부 투자적격 SOC사업자에 대하여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조 1항 3호 : 2003/1/3 개정·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도시철도·궤도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중 투자적격기업에 대하여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기회를 제공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콜차입거래 금지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39조의2 1항 : 2003/7/29 개정·시행)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콜차입을 금지함

- 자금중개(콜)시장 참가기관으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제외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39조의2 1항 15호 : 2003/7/29 개정·시행)
 - 국민투자기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에서 제외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 신규지정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60조 10호 : 2003/7/29 개정·시행)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으로 신규 지정

- 자금중개(콜)시장 참가기관으로부터 국채관리기금·채권안정기금 제외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60조 8호 및 9호 : 2003/7/29 개정·시행)
 - 기금의 폐지·청산을 반영하여 국채관리기금 및 채권안정기금을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에서 제외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콜차입거래 금지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60조 : 2003/7/29 개정·시행)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해 콜차입을 금지함

- 용어변경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조, 1-4조, 1-7조, 2-2조, 2-3조, 2-4조, 2-5조, 2-17조 등 : 2003/5/20 개정·시행)
 -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심의위원회의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증권업감독규정과 용어상의 일관성을 도모
 - 시스템 트레이딩 → 시스템 매매
 - 잔고 → 잔액·잔량

- 금융용어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3/5/6 개정·시행)
 - 잔고 → 잔액·잔량
 - <별표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7조 2항, 12조 1항 본문 3호 및 4호)
 - <별표2>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13조 3항 본문 3호 및 4호, 19조 1항 및 2항) 등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1. 증권거래법

-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서명·확인 의무화

(8조 4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

-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공시위반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부과

(14조 1항 1호의2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킴

-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4조의6 2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영업정지

(57조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금감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 상장법인 임원의 보수 공시 (186조의2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188조의6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
 -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

(191조의19 1항 : 2003/12/31 개정, 2004/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채무이행 보증을 하지 못함

2. 증권거래법 시행령

-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2조의3 6호·7호 : 2003/2/24 개정·시행)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가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 또는 이러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를 유가증권에 추가

- 유가증권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제한 폐지

(36조의2 1항 3호 : 2003/2/24 개정·시행)

- 기존에 일정비율 이상을 수익증권 또는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에 관한 제한을 폐지

○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을 신고 의무화 (83조 3항 7호 : 2003/2/24 개정·시행)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이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가배당율에 의하여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매매중개 증권회사의 거래대상 확대 (84조의27 6항 : 2003/2/24 개정·시행)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매매의 중개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을 종전에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기관투자자 등으로 확대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 허용 (1조의4 : 2003/3/10 개정 · 시행)
 -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매매중개 등을 하는 경우, 종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종가기준 $\pm 5\%$ 이내의 가격변동을 허용
 - 단일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은 30분으로 설정
 - 다만,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가 임의로 결정한 매매체결 시각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5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지정 유가증권의 범위 구체화 (1조의3 : 2003/3/10 개정 ·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6호 및 7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를 증권거래법시행령 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명시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003/3/10 개정 · 시행)
 - 기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조의3(일괄신고서의 제출), 3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13조(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13조의2(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36조의1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기준) 등 일부사항을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 마련 (2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간접투자로 정의
 - 간접투자에 해당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음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설정·운용 (2조, 28조, 55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을 설정·운용
 -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

- 투자회사 등록,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 관리 (2조, 41조 1항, 43조 3항, 55조, 128조 2항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등록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 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

(2조, 69조, 77조, 87조 ~ 92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장내·외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
-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제도, 투자회사에 법인이사제도를 도입
-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을 설정하여 간접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자문·일임대상 확대

(145조 ~ 147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투자자문업의 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일임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겸업제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
 - 종래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규정을 이관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폐지 (부칙 2조 : 2003/10/4 제정, 2004/1/4 시행)

-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폐지
 - 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전에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는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적용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2조의2 및 2조의3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담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

○ 동일 감사인에 의한 6년을 초과한 감사의 금지 (4조의2 4항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원칙적으로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없음
- 예외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모기업과의 관계상 연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을 허용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 작성 (7조의2 및 14조의2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을 포함

—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8년간 보존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제재완화 및 불이익한 대우의 금지

(15조의3 : 2003/12/11 개정, 2004/4/1 시행)

— 회사의 회계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감사인의 수임제한규제 완화 (2003/6/30 개정 · 시행)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구분되던 감사업무 수임제한을 폐지 (<별표> 삭제)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과 감사반에게도 감사업무 기회를 확대

— 다만,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종전과 동일 (4조)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중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수행 가능
- 대형 금융기관의 종류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조세특례제한법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87조의4 : 2003/5/10 개정 · 시행)
 -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저축금액의 60% 이상을 상장 또는 등록 주식 등에 투자하고 저축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 1인당 8천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명시
(33조 1항 : 2003/12/30 개정)
 -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

-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05/1/1 시행)
-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04/1/1 시행)

9. 신탁업법 시행규칙

○ 신탁회사의 자금운용 대상유가증권의 범위확대 (6조 7호 : 2003/4/2 개정·시행)

— 신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증권거래법시행령상의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 또는 이러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를 추가

- 증권거래법시행령 2조의3 6호 및 7호의 개정(2003. 2. 24) 사항 반영

○ 과태료 징수절차 변경 (9조 : 2003/4/2 개정·시행)

— 신탁업법시행령 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4항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변경

-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22조 5호 : 2003/1/3 개정·시행)
 -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하는 부실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수자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면제

- 부실기업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정비 (122조 2호 : 2003/1/3 개정·시행)
 - 부실기업 지원방식이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매수관련 조항을 삭제
 - 기존에는 「채권은행단의 금융지원 등 특혜를 받은 인수자가 부실기업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면제하였으나,
 - 현재 채권은행단은 인수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신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

-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정비 (122조 6호 : 2003/1/3 개정·시행)
 -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의한 엄격한 사후관리에서 자율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매수관련 조항을 삭제

- 기존에는 채권은행이 위탁경영관리 기업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감독규정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에 대해 공개매수를 면제하였으나,
-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으로, 채권은행의 위탁경영관리가 은행의 자율관리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

○ 외국기업의 재무정보 공시기준 완화 (48조 2항 : 2003/1/29 개정 · 시행)

— 원화표시채권(주식연계채권 제외)의 발행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추가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

- 종래에는 ① 당해 회계기준과 우리 회계기준의 차이, ② 우리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한 계정과목별 금액, ③ 우리회계기준으로 조정한 요약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였음
- 이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가증권 공모발행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상장법인 등의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요건 폐지 (57조 1항 : 2003/1/29 개정 · 시행)

— 이사회결의일 전일 주가에 따라 시가발행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가발행의 자율성을 제고

- 종전에는 공모가액 결정보다 상당기간 앞선 이사회결의일 전일에 산정한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시가발행을 허용

○ 신주인수권증서 중개 증권회사 지정의 예외인정 (58조 : 2003/1/29

개정 ·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지정의무를 면제

- 종래에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중개 증권회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투자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상장이 곤란

○ 새로운 유가증권의 도입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정비

(2003/3/19 개정 ·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시행령 2조의3 6호 ; Equity Covered Warrant) 및 주가연계증권(시행령 2조의3 7호 ;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전매가능성 기준 마련

-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형태 및 유통과정상의 특성이 채권과 유사하므로 채권에 준하여 전매가능성 판단기준을 마련
- 실물증권의 발행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12조 1항 5호)

—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17조 2항 6호, 20조 1항 6호)

- 주식워런트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은 증권회사가 파생금융상품영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만기상환능력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토록 함

— 추가연계증권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일부 단축

- 만기시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추가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을 무보증채권과 동일하게 7일로 단축 (23조 5호)
-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발행조건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연계증권의 지급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대하여는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로 단축 (23조 6호)

○ 주요경영사항 신고대상의 확대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2003/3/19 개정 ·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가배당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상장법인 등이 현금배당을 결정한 경우, 이를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하여 시가배당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69조 1항 7호)
- 투자자에게 기업의 결산에 관한 자료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상장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공시시점을 앞당김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되어 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공시 (69조 1항 19호)

-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의 기준일 마련 (132조의2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대량보유·변동보고의 보고기준일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상신주의 취득, 차입·상환, 증여, 상속 등으로 주식 등의 보유비율 변동시 그 보고기준일을 규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내용을 정비
(34조, 65조, 75조, 98조, 117조, 145조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금감위의 조치내용 중 「위법내용의 공표요구」의 행정조치를 「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만기해지절차 보완 (113조, 114조 : 2003/3/19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등이 만기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보완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방법 개선 (106조 1항, 111조 4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의 매수·매도주문을 허용하고, 매수주문의호가범위 상한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확대

- 매도주문의 호가범위는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
 - 다만, 매수·매도주문은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근거 마련

(111조 5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의 근거를 확보
 - 다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매도가격은 당일 종가와 당일 종가로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범위내로 제한

○ ECN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근거 마련

(110조 1항, 111조 6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ECN시장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시 적용되는 호가 및 수량 등의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 자기주식 처분시 유가증권시장의 정규시장, ECN시장 및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처분방법 중 2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신고서에 그 처분방법 및 각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주식의 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의 신규 취득신고서 제출 허용

(105조 1항 ~ 3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이라도 신규의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기간 종료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주식의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116조 1항 : 2003/9/13 개정 · 시행)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시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발생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중간배당 관련금액 등을 가감 조정

○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공시방식 개선 (103조 3항 : 2003/9/13 개정 · 시행)

—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은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제외

< 제외사항 >

-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
- 최근 5년간 배당사항
- 최근 6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 주식의 분포사항
- 직전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자기주식 처분신고서 및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시점 조정 (2003/9/13 개정·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신고서는 최초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의 5일 전까지 제출

(109조 2항)

— 처분결과보고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일 또는 최종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111조 3항)

○ 자기주식 매매주문 예정내용의 신고의무화

(106호 1항 3호, 111조 4항 3호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자기주식 매매주문 예정내용 사전 공시의무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의 사전 신고의무로 변경

○ 자기주식 취득한도초과 사실의 통보의무 (116조 3항 : 2003/9/13 개정, 12/1 시행)

—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탁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함

○ 기업공개·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의 예외적인 적용면제 (23조 2항 : 2003/9/13 개정·시행)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청약일 전에 다음의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의 적용을 면제

-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주식수를 당초 공모수량의 80% ~ 120% 이내에서 변경
-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초과배정하거나 초과배정주식수를 변경

○ 청약자로부터 공모주식 매입시 공개매수의무 면제

(122조 15호 : 2003/9/13 개정·시행)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시 인수증권회사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청약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도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공모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공개매수의무를 면제

○ 용어변경 (19조, 27조 등 : 2003/9/13 개정·시행)

— 간사회사 → 주관회사

2. 증권업 감독규정

○ 증권회사 고유재산의 운용위탁에 관한 규제 마련

(2-63조의2 : 2003/1/3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수익자 또는 주주가 당해 증권회사 1인인 사모증권투자신탁 또는 사모증권투자회사의 형태로 하고,
 - 자산운용목적·운용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 자산운용업자 선정기준·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 1인 사모증권투자신탁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비율 산정기준 마련

(2-20조 : 2003/1/3 개정·시행)

- 수익자 또는 주주가 증권회사 1인인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개별자산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비율을 산정

○ 전환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2-52조 : 2003/3/6 개정, 2003/2/28 시행)

- 금감위 의결을 통해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을 연장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강화 (1-10조, 별표3 : 2003/3/6 개정 · 시행)
 - 국내지점 및 현지법인 신설시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본국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도 허가요건으로 반영
 - 국내지점 신설허가시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 적용

- 증권회사의 예탁증권담보대출 규제 완화 (5-20조 : 2003/3/6 개정 · 시행)
 -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유가증권의 1월 이상 예탁요건 삭제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5-63조 : 2003/3/6 개정 · 시행)
 - 투자일임계약 재산의 30% 이상을 투자적격등급미만채권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의 거래대상범위 확대
(7-1조, 7-2조, 7-3조 및 7-4조 : 2003/3/6 개정 · 시행)
 -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의 채권매매 중개대상법인을 종전의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자자 등으로 확대

-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시장위험액 산정방식의 마련 (2-18조 : 2003/3/6 개정 · 시행)
 - ETF와 주가지수선물 또는 ETF와 주식바스켓간의 차익거래시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위험액으로 설정

- 기존 주가지수선물과 주식바스켓간의 차익거래시 시장위험액 산출과 동일한 방식

○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5-72조, 5-73조 : 2003/3/6 개정 · 시행)

기 준	개 정
·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권, 채권, DR, 수익증권	·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를 추가
·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좌 동>
투자 불가	· 외국기업이 공모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사채권(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 국내기업의 해외발행 CB, BW, EB	· 국내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일반 사채권을 추가
· 외국기업이 발행한 CP	· 외국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CP로 한정

○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의 결과반영 (2003/3/6 개정 · 시행)

- 위험상당치 → 해당위험값
- 부외거래 → 장부외거래
- 시스템 트레이딩 → 시스템 매매
- 잔고 → 잔액/잔량

- 유가증권 월간거래내용 등의 통지방식 개선 (4-19조 : 2003/3/6 개정 · 시행)
 - 오프라인 고객의 신청 등에 의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를 허용
 - 전자우편에 의한 매매체결내역 통보는 이미 허용

- 담보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5-20조 2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에 포함
 -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

-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가격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5-21조 1항·2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환매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ETF)의 경우에는 상장주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
 - 수익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기준가격으로 함

-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조정 (2-13조 : 2003/4/16 개정 · 시행)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의 미실현평가이익을 미실현평가손실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차감
 -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해외채권을 차감항목에서 삭제

- 투기적인 매도옵션에 대한 위험가중 (2-22조 : 2003/4/16 개정 · 시행)
 - 투기적인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에 대하여 기초자산 해당위험값의 일정률을 가산하되, 콜옵션과 풋옵션의 위험가산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함
 - *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옵션 :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가와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액에 해당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옵션
 - 매도옵션을 취급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옵션위험액 산정시 간편법의 사용을 금지

- 종금합병증권사 여신관련자산의 범위 확대 (2-50조 : 2003/4/16 개정 · 시행)
 - 종금계정 운용자산의 범위를 종전 종금법상 신용공여에서 지급준비자산(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및 일부 예금·예치금(CD, MMDA, MMF, 금융어음 등)까지 확대

- 경영실태평가 부문의 개편 (2-31조 2항 : 2003/4/16 개정, 6/30 시행)
 - 증권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재무건전성 부문중 일부항목을 자본적정성 부분으로 조정·흡수하고 수익성부분을 확대·신설

-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소유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2-8조 : 2003/11/1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인수영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3개월간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삭제

○ 증권회사간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영업용순자본 인정

(2-7조 : 2003/11/1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간 합병(영업전부의 양수도 포함)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시장위험액을 부과

○ 채권매매결제일 변경에 따른 회계상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설정 면제

(2-5조 : 2003/11/19 개정 · 시행)

-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회계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

○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의 정비 (2003/11/19 개정 · 시행)

기 준	개 정	관련 규정
듀레이션	가중평균만기(duration)	2-19조
BIS	국제결제은행(BIS)	3-3조
CD	양도성예금증서(CD)	3-3조
M&A	기업인수 및 합병	4-16조
인센티브	성과보수	4-20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4-48조
딜러	자기매매업자	5-26조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법의 합리화 (2003/12/31 개정 · 시행)

- 기초위험액 산정시 경영환경 등의 급변에 대한 예외 인정 (2-25조 2항)

- 영업양수도 또는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위험의 대폭적인 감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기초위험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으로서 기존에는 과거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위험액 미산정 근거의 명확화 (2-24조 1항)

- 대손충당금은 미래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영업용순자본에 차감(비용처리)되어 있으므로, 위험산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별도예치금 예치기관의 운용대상 금융상품 확대 (3-3조 : 2003/12/31 개정·시행)

- 별도예치금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의 운용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자보호법 이외에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원금이 보호되는 금융상품으로 확대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수수료 배분가능 대상 명확화

(4-32조 2호 : 2003/12/31 개정·시행)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이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는 동일 사업체의 범위에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도 포함

- 예탁증권담보대출 담보유가증권의 범위에 ELS 포함
(5-20조 2항 : 2003/12/31 개정 · 시행)
 - 공모로 발행된 추가연계증권(ELS)을 예탁증권담보대출시의 담보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

-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업무시 환매가격 산정방식 관련규정 삭제
(5-35조 3항 삭제 : 2003/12/31 개정 · 시행)
 -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업무 영위시 환매수 · 도 가격산정방식을 동일한 내용의 증권업협회 표준약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의 규정을 삭제

-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규제완화
(7-3조 : 2003/12/31 개정 · 시행)
 -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의 업무규정 제 · 개정을 감독원장 승인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변경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주식연계증권 등 신종증권 발행내역의 보고서식 마련
(별지 1호의2 : 2003/3/6 개정 · 시행)
 - 주식연계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사의 동 증권 발행내역을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항목에 추가

-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시장위험액 산정방식 마련 (2-5조 : 2003/3/6 개정·시행)
 - ETF와 주가지수선물 또는 ETF와 주식바스켓간의 차익거래시 각각의 포지션에 대하여 2%를 위험액으로 설정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 서식 개편 (별표12, 별지 1호 서식 : 2003/3/6 개정·시행)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에 따른 계정과목 마련
 - 연결재무정보 보고서식 마련 등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부여근거 마련 (2-14조, 별표7 : 2003/4/11 개정, 4/16 시행)
 - <별표8>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의 적용근거를 마련

- 계량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실시 근거 신설 (2-14조 6항 : 2003/4/11 개정, 4/16 시행)
 - 계량평가등급의 2등급 이상 악화, 2분기 연속 악화 등의 경우에는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

- 증권회사 업무보고서 서식 개편 (별지 1호 서식 : 2003/4/11 개정, 4/16 시행)
 - 경영실태평가 부문의 개편내용 반영
 -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국내 및 해외자산 보유현황 보고서식 마련

-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1호 서식 및 별표12 :
2003/11/19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의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중 (제 8호) 증권회사와 관련된 개정사항과 주가연계상품에 대한 재무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변경
 - 파생금융거래의 규모증가 및 상품다양화에 따라 업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

-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부담 완화 (5-13조 : 2003/12/31 개정·시행)
 - 분기별로 별도 보고하던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의 항목으로 편입

- 주금납입에 의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초과시 기준일 추가
(7-1조 1항 : 2003/12/31 개정·시행)
 - 주금납입으로 인하여 주금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 및 외국인 취득주식수의 계산기준일을 납입일 다음날로 함

- 외국인의 DR 원주전환 신고의 전산화 (7-3조 1항 : 2003/12/31 개정·시행)
 - 외국인이 증권예탁원에 전환지시를 하면 증권예탁원이 금감원에 전산보고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서면보고 절차를 폐지

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1인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의 분리
(37조의2 : 2003/1/3 개정 · 시행)
 - 투신운용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수익자가 1인인 투자신탁(사모단독투자신탁 또는 공모단독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 허용 (39조의2 : 2003/1/3 개정 · 시행)
 -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에 대해 유가증권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 다만, 부도 · 워크아웃채권, 관리종목, 비상장 · 비등록주식 기타 즉시 처분이 곤란한 유가증권은 납입대상 유가증권에서 제외

- 단독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간 자전거래의 제한 (43조 : 2003/1/3 개정 · 시행)
 - 수익자가 1인인 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간 유가증권의 자전거래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사모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간의 운용실적 구분 공시 (57조 : 2003/1/3 개정 · 시행)
 -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을 공시할 경우 사모투자신탁과 공모투자신탁을 구분하여 공시

- 위탁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30조 3항 : 2003/3/6 개정 · 시행)

- 위탁회사에 대한 계량평가 주기를 기존의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

- 현대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 축소기한 연장

(부칙 2조 : 2003/3/6 개정 · 시행)

- 현대투자신탁운용(주) 신탁재산의 연계대출 잔액 축소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4년 2월 29일로 연장

- 모회사인 현대투자신탁증권(주)의 외자유치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 연계대출 잔액의 축소한도는 종전기준(1998년 6월말 잔액의 31%인 9,594억원 이내)을 유지

- 자사주투자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48조의2 1항 ~ 3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투자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경우에도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매매방법제한 등을 준용

- 다만 신탁방식의 경우 취득·처분신고 주식수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1일 매매수량 제한은 주권상장법인 등 발행주식 총수의 1% (직접 취득·처분시 주문가능한 최고한도) 이내의 기준을 적용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제한 (48조의2 4항 1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사주 취득·처분후 1월간 처분·취득을 금지

- 투자신탁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취득시의 금지기간(취득후 6개월간 처분 금지 및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금지)을 단축하여 적용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초과시의 매수운용금지

(48조의2 4항 2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매수운용을 금지

- 한도초과시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사주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위탁회사에 한도초과사실을 통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116조 3항)

○ 자사주 신탁재산의 운용범위 제한 (48조의2 4항 3호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 취득을 위한 상품 취지에 맞도록 신탁재산의 운용범위를 제한

- 자사주,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및 기타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을 금지

-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보고서 제출 허용 (92조 : 2003/10/1 개정 · 시행)
 - 위탁회사가 금감위에 제출하는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계량평가항목 조정 (별지 5호, 6호 : 2003/3/6 개정 · 시행)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 자본유지비율 등 3개 항목을 폐지하는 한편 총자산 순이익률 등 3개 항목의 산식을 변경
- 계량평가항목 조정에 따른 관련항목 조정 (2003/3/6 개정 · 시행)
 - 계량평가항목의 조정에 따라 비계량평가항목을 일부 조정 (별지 5호)
 - 계량 및 비계량평가항목이 조정된 신탁재산운용의 적정성 부분의 평가등급정의를 변경 (별지 7호)

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1인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의 분리 (13조의2 : 2003/1/3 개정 · 시행)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주주가 1인인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과 공모증권투자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

- 사모증권투자회사와 공모증권투자회사간의 운용실적 구분 공시
(22조 : 2003/1/3 개정 · 시행)
 - 투자신탁협회가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을 공시할 경우 사모증권 투자회사와 공모증권투자회사를 구분하여 공시

-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보고서 제출 허용 (32조의2 : 2003/10/1 개정 · 시행)
 -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금감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방식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매분기 영업보고서 및 매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7. 증권 · 선물조사 업무규정

-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별표3 II.라 : 2003/8/27 개정 · 시행)
 -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부과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 대신 예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대상금액으로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별표3 III.1.나, 2.나 : 2003/8/27 개정·시행)

— 법인의 이사 등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상의 신고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위반정도를 감안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의 경우

	기 존	개 정
법인의 이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	3천만원	5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
법인의 이사가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1천만원	2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

-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의 경우

	기 존	개 정
법인의 이사	3천만원	5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
신고자의 특별관계자 및 그 대리인	1천만원	2천만원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

○ 적용률 범위의 확대 (별표3 IV.나 : 2003/8/27 개정·시행)

— 비계량적 위반사항(수시공시 위반 등)에 대한 적용률이 지나치게 높고 경직되어 있으므로 동 적용률의 범위를 확대

- 50/100 ~ 100/100 → 20/100 ~ 100/100
- 다만, 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적용률을 적용

— 법취지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 예정금액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중한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적용률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조정기준	조정범위
상향 조정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단계
	다수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단계
하향 조정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1단계
	부도발생,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	2단계

- 1단계는 계량적 위반사항의 경우 10/100,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경우 20/100 임

○ 위반횟수, 위반금액 등을 감안한 과징금의 차등 부과

(별표2 : 2003/8/27 개정 · 시행)

— 위반횟수, 위반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비계량적 위반행위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위반횟수 및 금액을 추가

- 위반행위의 횟수 : 10회 이상은 「상」, 3~9회는 「중」, 3회 미만은 「하」
- 수시공시사항 중 계량화가 가능한 위반행위 : 위반금액의 비율이 4배 이상은 「상」, 2~4배는 「중」, 2배 미만은 「하」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자산총액 대비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은 「상」, 1~5%는 「중」, 1% 미만은 「하」

— 위반정도의 판단요소 중 하나인 주가변동률을 상승시 뿐만 아니라 하락시의 경우도 감안하도록 절대값으로 변경

• 주가변동률 = |(최고주가/최저주가) - 동일업종 지수변동률|

○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감경 (별표3 V.1.나 : 2003/8/27 개정·시행)

—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한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경하던 것을 위반일수에 따라 감경비율을 차등 적용

시정일수	3일 이내	4 ~ 6일	7 ~ 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8.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의 추가 (7조 : 2003/1/3 개정·시행)

—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에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에도 다음 회사를 추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의 직접통제 하에 있고,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회계감사보다 더 엄격하게 자산·부채를 실사하므로 외부감사를 받을 실익이 없음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한 회사, 금감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및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등
 - * 현실을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관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 구체화

(10조 7항 : 2003/1/3 개정·시행)

— 감사인지정 대상이 된 회사 및 당해 지정감사인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사유를 구체화

-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외감법시행령 1조의3(지배·종속관계)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 방지방안 보완 (11조 1항 5호 : 2003/1/3 개정·시행)

—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수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감사인의 부당교체 사유에 추가

- 감사인 지정 및 공개감사적격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감사인 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의 확대 (별표 2호 및 부칙 : 2003/1/3 개정, 2004/4/1 부터 적용)
 - 감리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을 기존 「최근 1개 사업연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하여 감리결과 조치점수 반영의 합리성을 제고
 - 최근사업연도부터 가중치를 각각 50%, 30%, 20%씩 부여
 - 점수산정대상기간을 2003년도에는 1년, 2004년도에는 2년, 2005년도에는 3년으로 단계적 확대

- 감사인의 감사계약체결 보고기한 단축 (16조 2항 : 2003/1/3 개정·시행)
 - 감사인의 증선위에 대한 감사계약체결 보고시기를 기존 「익월 10일 까지」에서 「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하여 감사계약체결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

- 감사보고서 등의 문서제출방법 명시 (16조 4항 : 2003/1/3 개정·시행)
 -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

- 감사보고서의 중복제출 문제 개선 (16조 5항 : 2003/1/3 개정·시행)
 - 증권관계법규에 의하여 감사보고서가 제출·공시된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보고서의 중복제출을 면제

- 외감법 : 주주총회후 2주일내에 감사보고서 제출
- 증권거래법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공시하며, 주주총회 1주일전에 제출하는 감사종료보
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거나 공시대상은 아님

9.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금융주력자로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실시 범위 명시

(2003/3/6 개정·시행)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을 제출한 전
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법, 기타 검사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검사범위>

- 전환대상자가 제출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조건 등의 이행
상황 확인 (47조의2 1호)
- 전환대상자의 재무변동상황 및 금융거래 내역 (47조의2 2호)

○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별표3 : 2003/9/13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02/4/27 개정, 7/27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5개 항목이 추가되고, 과징금 부과비율이 종전 일률적으로
10%이던 것이 20%, 10%, 2%로 다양화됨에 따라 단계별 부과비율
표시방식을 변경

- 은행법 개정(2002/4/27 개정, 7/27 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2/8/21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15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

- 기관경고시 대표자에 대한 제재의제 폐지 (22조 1항 : 2003/9/13 개정 · 시행)

-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제재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제재의제」를 폐지
 - 제재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 5조 및 18조에 의거 대표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조치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2003/3/6 개정 · 시행)
 -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계획 사전예고제를 확대 (17조)
 - 기존 종합검사 실시계획 「사전예고제」를 금융기관의 자체 시정기능 제고를 위해 부문검사시에도 확대 실시
 -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이 검사서의 배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39조의1)

1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율 규정

(5조 1항 3호 : 2003/3/19 개정·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율을 발행가액 총액의 0.9/10,000로 명시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유가증권의 발행분담금율을 정함

○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에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

(5조 1항 : 2003/12/31 개정, 2004/1/1 시행)

— 기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분담금 요율인 발행가액 총액의 0.9/10,000을 면제

12.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 일부 투자적격 SOC사업자에 대하여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

(2조 1항 3호 : 2003/1/3 개정·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도시철도·궤도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중 투자적격기업에 대하여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기회를 제공

13. 신탁업 감독규정

○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12조의2 2항, 3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시에도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매매방법제한 등을 준용
 - 증권거래소 등이 시장안정 유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1일 매수주문수량을 확대하여 취득 가능
 - 정규시장에서의 매도호가범위, 1일 매도주문수량, 매도주문 위탁 증권회사의 제한, 매도주문수량의 주문전일 신고
 -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처분 및 ECN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시에도 매도수량 및 매도호가 제한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 및 자산운용범위의 제한 (12조의2 4항 : 2003/10/1 개정, 12/1 시행)

- 자사주 취득 후 1월간 처분금지, 처분 후 1월간 취득금지
- 위탁자로부터 자사주 취득금액한도 초과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자사주 취득금지
- 자사주 및 현금성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금지

14.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콜차입거래 금지 (39조의2 1항 : 2003/7/29 개정 · 시행)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콜차입을 금지함

- 자금중개(콜)시장 참가기관으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제외

(39조의2 1항 15호 : 2003/7/29 개정 · 시행)

- 국민투자기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에서 제외

15.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 신규지정

(60조 10호 : 2003/7/29 개정 · 시행)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으로 신규 지정

- 자금중개(콜)시장 참가기관으로부터 국채관리기금 · 채권안정기금 제외

(60조 8호 및 9호 : 2003/7/29 개정 · 시행)

- 기금의 폐지 · 청산을 반영하여 국채관리기금 및 채권안정기금을 자금중개시장 참가기관에서 제외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콜차입거래 금지 (60조 : 2003/7/29 개정 · 시행)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해 콜차입을 금지함

III. 증권거래소 규정

1. 업무규정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End)방식의 도입 및 호가정보공개 확대
(2003/9/26 개정, 시행일 지정)
 - 시가 및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시간적 범위를 연장
(22조 8항, 9항 : 2004/1/26 시행)
 -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종목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를 임의종료 (4조 3항 1호 : 2004/1/26 시행)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정보공개 등 관련규정 정비
(82조 : 2003/10/6 시행)
 - 예상최우선훈가 공개 → 예상3우선훈가 공개

- 호가 및 주문유형의 다양화 (2조 1호의2, 2호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 또는 매수별로 상대방향 또는 동일방향의 특정가격으로 지정하는 호가 및 주문유형을 신설
 -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 상대방향으로 최유리가격으로 지정
 - 최우선훈가호가(주문) : 동일방향으로 최우선훈가가격으로 지정

○ 시간외시장제도 개선 (4조 3항 2호 등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거래시장을 신설

매매거래시간	07:30 ~ 08:30
종 류	장개시전 시간외증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가격요건 등	전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준용

○ 자기주식 매매제도의 개선 (2003/9/26 개정, 12/1 시행)

—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호가를 허용 (34조 1항)

-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호가할 수 없음

—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의 신규호가 및 정정호가의 가격제한을 완화

(34조 1항 2호, 2항)

기 준	개 정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의 가격 중 높은 가격부터 10호 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이내	당일 중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의 최고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부터 10호가가격 단위 낮은 가격 이내

— 시간외대량매매방법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을 허용하고, 가격은 증가
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범위 이내로 제한 (32조 5항, 34조 4
항 3호)

— 자기주식매수 특례제도의 가격요건 정비 (34조의2 2항)

- 일반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선에 준하는 가격요건 정비

-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 매매시에도 직접취득(처분)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32조 6항, 34조의3, 63조의2)
- 매매거래중단제도의 보완 (25조 2항 4호, 4호의2 : 2003/9/26 개정, 10/6 시행)
 - 풍문 및 보도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사유에 신설된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명문화함
 - 분식회계 발생, 반기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
- 대용증권제도의 개선 (70조 2항 1호 : 2003/9/26 개정, 10/6 시행)
 -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즉시 퇴출사유 등에 해당하여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유형 신설 (92조 1항 11호, 2항 : 2003/9/26 개정, 9/29 시행)
 - 취득·처분의사가 없는 통정·가장매매를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추가
- 회원제재 등 관련사항 정비 (2003/9/26 개정, 9/29 시행)
 - 임직원에 대한 문책처분요구의 유형에서 경고 및 주의를 삭제
(97조 3항, 98조 2항)
 - 회원제재에 대한 재심처리기간을 기존 2월에서 1월로 단축 (99조 2항)

2. 업무규정 시행세칙

- 채권장내매매의 결제일 변경 (2003/4/8 개정, 6/1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KTS)에서의 매매분에 대해서는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 (6조 1항 단서)
 - 여타 채권매매 및 Repo 매매분은 현행과 같이 당일결제거래를 유지

- 기준가격제도 개선 (24조 1호 및 3호, 별표1 : 2003/5/27 개정, 6/30 시행)
 - 기준가격 결정시 복수의 합치가격이 있는 때에는 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 평가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의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신규상장종목의 발행가액이 복수인 경우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은 발행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가중평균한 가격(VWAP)으로 함

-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시 별도의 구분표시를 의무화
(9조 1항 13호 및 69조 8호 : 2003/5/27 개정, 7/28 시행)
 - 규정 16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시에는 주문 및 호가표에 별도의 구분표시를 하도록 함

- 프로그램매매 및 상장지수펀드 관련호가 구분방법 개선 (9조 1항 12호, 112호의2 및 69조 7호, 7호의2 : 2003/5/27 개정, 6/30 시행)

— 프로그램매매 및 상장지수펀드(ETF)관련호가를 특성별로 재분류하여 차익거래 관련호와 주식집단매매 관련호가로 구분함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옵션거래 관련호가 : 지수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 ETF 관련호가 : ETF 차익거래, ETF 설정을 위한 주식집단 거래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익거래 관련호가 : 지수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ETF 차익거래 · 주식집단매매 관련호가 : 비차익거래, ETF 설정을 위한 주식집단매매거래

- 채권의 신고매매 사유에 국고채환매거래를 추가

(55조 1항 5호 : 2003/5/29 개정, 6/2 시행)

— 국고채환매거래를 「채권의 신고매매」로 할 수 있도록 함

- 국고채환매거래의 거래시간 (55조 2항 3호 : 2003/5/29 개정, 6/2 시행)

— 국고채환매거래의 매매거래시간을 장개시 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로 함

- 국고채환매거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방법 명시

(55조 6항 : 2003/5/29 개정, 6/2 시행)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참가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신규신청회원의 소액채권전담회원 우선지정권 폐지

(43조 2항 : 2003/7/18 개정, 8/1 시행)

— 신규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지정

-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아닌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

○ 매도호가에 대해 매도주문 대행계약 체결회원의 매도호가 우선조항 신설

(54조 2항 1호 : 2003/7/18 개정, 8/1 시행)

— 소액채권의 장종료매매시 매출기관과 매도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매도대행 회원사)의 매도호가에 대하여 매도우선권 부여

○ 상장지수펀드(ETF) 호가가격단위 조정 (21조 2항 3호 : 2003/8/20 개정, 9/1 시행)

— 1주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ETF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를 기존 50원에서 10원으로 조정

○ 동시호가 수량배분방법 개선 (22조 2항 : 2003/8/20 개정, 8/25 시행)

— 동시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량배분단계를 6단계로 확대

기 준	개 정
매매수량단위의 10배 → 잔량의 1/2 → 잔량	매매수량단위의 10배 → " 50배 → " 100배 → " 200배 → 잔량의 1/2 → 잔량

○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요구·지원 및 공정거래질서 계도활동 근거 명시 (90조의2 및 90조의3 : 2003/8/20 개정, 8/25 시행)

— 거래소가 회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출·조치결과 등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제시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거래소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원, 기관투자자 등에 대하여 출장, 소집교육, 공한발송 등의 방법으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End) 기준 마련 및 호가정보공개 확대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장개시(장종료) 5분전부터 장개시(장종료)시까지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종가)를 기준으로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를 적용

(24조의3 1항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장개시(장종료)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까지로 함

(24조의3 1항 :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즉시 공표하며,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 및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24조의3 4항, 5항 : 2003/9/26 개정, 9/29 시행)

- 신규상장종목 등 호가증가로 인한 매매체결 지연이 우려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4조의6 6항 : 2003/9/26 개정, 9/29 시행)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호가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82조의3 : 2003/9/26 개정, 10/6 시행)

- 예상최우선평가 공개 → 예상3우선평가 공개

○ 호가 및 주문유형의 신설 (2003/9/26 개정, 2004/1/26 시행)

- 호가(주문)의 종류 및 유형에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를 신설 (7조 1항 1호, 9조 1항 3호·6호, 69조 6호)

-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의 가격규제

(2조의2 내지 2조의5)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을 부여 가능 (9조 1항 6호의2, 69조 10호, 10조 3항)

- 최유리지정가호가 등 신설된 호가유형(조건)의 경우 공매도호가, 시가기준가종목, 정리매매종목, 단일가매매의 경우에 입력할 수 없도록 함 (11조 2항 2호)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 도입 (2003/9/26 개정, 10/6 시행)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한 매매신청방법을 마련

(34조 1항 1호, 36조 1항, 37조의2 1항)

- 매도 및 매수 쌍방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함

— 회원이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내용의 변경 가능 (34조 3항, 36조 5항, 37조의2 5항)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의 접속장애시 처리방법을 규정

(34조 4항·5항, 36조 5항, 37조의2 5항, 38조 2항)

-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의 접속장애 등으로 협상내용의 통보·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여 호가할 수 있음
- 회원이 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외시장제도의 개선 (8조 1항 2호, 37조 2항, 38조 1항 4호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신설

- 호가접수시간 : 07:30 ~ 08:30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가격요건은 전일 종가를 기준

○ 자기주식매매제도 개선 (2003/9/26 개정, 12/1 시행)

— 신규호가의 회수를 기존 1회에서 분할호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회수제한을 폐지 (40조 2항)

- Stock Option 행사시 교부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호가(주문)의 경우 별도 구분표시 (9조 15호의2, 69조 8호의2)
- 자기주식신탁매매의 수량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의 수량으로 함 (40조의 3)
- 자기주식신탁매매의 수탁방법은 일반 자기주식매매의 경우를 준용 (68조의2)

○ 대용증권제도 개선 (2003/9/26 개정, 9/29 시행)

- 비상장증권투자회사 주권을 대용증권에 추가 (65조 2호·3호, 71조 5호, 72조 2항, 73조 1항 1호, 76조의2, 78조 2항)
 - 대용가격 산출기준일, 적용시기, 산출방법, 기준시세, 사정비율 등은 수익증권의 경우를 준용
- 회원이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환금성 등을 감안하여 사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77조 6항)

○ 투자자분류코드 정비 (67조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세분화

기 준	개 정
외국인 : 9000	·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 (ID)가 있는 경우 : 9000 · 그 밖의 외국인 : 9001

- 투자자분류코드 변동시 회원은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통계의 불일치를 해소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시의 결제일 일부 조정

(6조 1항, 84조 2항 2호 : 2003/10/8 개정, 11/1 시행)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에서 결제일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마감일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일을 그 다음 영업일로 변경
 - 이자락조치일도 이자지급일의 직전일에서 이자지급일의 직전일전일로 변경

○ 이상호가의 입력제한 (11조 1항 4호 : 2003/10/8 개정, 12/1 시행)

- 채권의 호가가격이 전일종가를 30% 초과(또는 미달)하는 매수(매도)호가에 대해 호가입력을 제한

3. 선물·옵션 업무규정

○ 기관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사후징수근거 마련 (2003/3/28 개정, 4/14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차익거래를 행하는 경우, 결제불이행위험이 크게 감소하므로 적격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회원 자율적으로 매매거래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징수시한은 헤지·차익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 12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76조 2항)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및 헤지·차익거래의 범위는 세칙에서 정함 (76조 4항)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는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4-1조 2항 6호의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로 하고, 헤지거래의 범위는 보유 주식포트폴리오의 가격하락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매도하는 매도헤지거래로 한정

○ 사후징수 추가위탁증거금의 납부 (78조 1항 : 2003/3/28 개정, 4/14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차익거래를 한 날에는 매매거래종료시 기준으로 15%의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 매매거래종료시 체크하는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는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차익거래를 행하지 아니한 날에만 체크함

○ 추가위탁증거금의 납부시한 및 결제시한의 단축 (2003/3/28 개정,

4/14 시행)

— 회원은 위탁자의 자금력,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 불이행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시한 및 결제시한을 각각 익일 12시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한까지 단축 가능 (78조 5항 및 89조 1항)

— 거래소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급격한 변동이 우려되는 때에는 주가지수선물 투기거래의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 5,000계약을 축소 가능 (95조 1항 1호 단서)

- 기존 주가지수옵션 및 주식옵션의 경우 변경근거가 있음

○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결제회원 및 매매전무회원의 범위에 추가

(2조 4항 1호, 2호 및 2조 5항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증권거래소 회원은 아니지만 KOSPI 200 선물·옵션 및 주식옵션 시장에 특별히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선물업자로서,

- 자기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결제를 자기 명의로 행하는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결제회원으로 함
- 매매전무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결제를 당해 매매전무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명의로 행하는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결제회원으로 함
- 자기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는 선물거래 특별참가자를 매매전무회원으로 함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공동결제 근거마련

(부칙 2조 1항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공동결제기간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

— 공동결제방법

-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는 매도(매수)의 결제회원이 매수(매도)의 결제회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 동시에 매도(매수)의 결제회원은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에 대해 부담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채무의 분담 근거마련

(부칙 3조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결제회원이 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가 인수하는 채무의 분담 등의 근거마련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상향 조정 (49조 : 2003/2/26 개정, 3/24 시행)

- 선물·옵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고 자금력이 약한 투자자의 신중하지 못한 시장참여로 인한 결제불이행 및 과도한 투자손실발생과 극단적 단기위주의 거래로 인한 가격왜곡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인수한 채무의 분담

(부칙 2항 1호 : 2003/12/26 개정, 2004/1/1 시행)

- 결제를 불이행한 회원이 증권거래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면, 인수한 채무의 전액을 증권거래소가 부담
 - 증권거래소의 배상기금을 사용
- 결제를 불이행한 회원이 증권거래소의 선물거래 특별참가자이면, 인수한 채무의 전액을 선물거래소가 부담

5. 유가증권 상장규정

○ ELS(Equity-Linked Security)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2003/3/31 개정·시행)

- ELS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을 채권에 관한 규정 준용 (17조 2항)
- ELS의 매매거래를 위한 업무규정 및 세칙의 개정 (부칙 2항)

○ 위조 및 변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45조 3항 1호·2호 : 2003/3/31 개정·시행)

- 상장유가증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때 매매거래정지기간을 1일로 단축

○ 중간배당 결의 및 배당수익율(시가배당율) 신고의무 폐지

(19조 1항 6호 및 2항 삭제 : 2003/3/31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상장법인 등의 신고등) 3항 7호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가배당율 공시가 의무화되고, 공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신고의무를 폐지

○ 회계처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거래소 상장 제한

(4조의2, 4조의3 : 2003/6/13 개정, 6/16 시행)

- 주권의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한 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상장심사를 기각하고 이미 상장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효력을 불인정

○ 상장이 불허된 법인의 시장진입 제한 (48조의2 : 2003/6/13 개정, 6/16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상장심사가 기각되거나 상장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법인은 3년간 상장신청을 제한
 - 다만,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정정하여도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42조의2 : 2003/6/13 개정, 6/16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폐지기준 미해당시 관리종목지정 해제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장폐지된 법인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48조의2 2항 : 2003/6/13 개정, 6/16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자본잠식 또는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후 3년간 시장진입을 제한

○ 주권의 신규상장요건 개선 (2003/9/5 개정, 9/8 시행)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요건 강화 (15조 2항 1호)

- <2요건>의 자본금 및 자기자본에 관한 요건을 각각 3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으로 강화

— 상장예정주식수 요건 강화 (15조 1항 2호, 2항 1호)

- 상장예정주식수에 관한 요건을 100만주 이상으로 강화

— <1요건>의 매출액요건을 강화 (15조 1항 3호, 2항 2호)

기 준	개 정
최근사업연도 200억원 이상	” 300억원 ”
최근3사업연도 평균 150억원 이상	” 200억원 ”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요건의 폐지 및 유보율요건 신설

(15조 1항 5호, 2항 3호)

- 현행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한 요건을 폐지
- 재무안정성에 관한 요건으로서 유보율(50%)요건을 신설

— 이익요건의 강화 (15조 2항 3호)

-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이익액 20억원 이상으로 강화

○ 국내·외 동시상장의 원활화 (2003/9/5 개정, 9/8 시행)

— 주식분산요건의 특례신설 (15조 1항 4호)

- 국내·외 동시상장의 경우 적격 외국증권시장에서 공모하는 주식을 공모비율의 산정시 포함하고, 국내에서 공모하는 주식수가 100만주(액면가 5천원)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 신설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예외사유 추가 (15조 1항 13호)

- 적격 외국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으로 발생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에 대해 예외를 인정

— 상장전 유상증자 규모제한에 대한 예외신설 (15조 1항 12호)

- 적격 외국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에 대해 유상증자 총액 산정시 불산입

○ 상장폐지법인의 재상장요건 강화

— 기업규모에 관한 요건을 신설 (15조의2 1항 1호, 2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자본금 : 50억원 이상
-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상장예정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 30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요건 강화 (15조의2 1항 3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소액주주지분율 : 20% 이상
 - 소액주주수 : 500명 이상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 70% 이하
- 이익요건의 강화 (15조의2 1항 4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최근사업연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이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익율이 5% 이상이거나 25억원 이상으로 이익요건을 강화
- 상장폐지후 합병제한 신설 (15조의2 1항 6호 : 2003/9/5 개정, 2004/1/1 시행)
 - 상장폐지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재상장요건을 비적용
- 제3자배정 증자주식에 대한 매각제한 (4조 4항 4호 : 2003/9/5 개정, 9/8 시행)
 - 상장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해서 상장 후 6월 또는 발행 후 1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매각을 제한
- 예비상장심사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4조 1항, 4항, 5항 : 2003/9/5 개정, 9/8 시행)
 - 상장폐지된 법인이 재상장하는 경우 예비상장심사를 실시

- 상장지수펀드의 신규상장요건 개선 (15조의4 2항, 18조 2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는 지정판매회사 중 1사 이상을 유동성공급자로 지정
 - 운용회사와 지정판매회사간에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 상장지수펀드의 괴리율 요건 신설 (37조의3 2항 및 40조 2항 : 2003/12/26 개정)
 - 괴리율 3% 초과상태가 10일간 계속 또는 분기별로 20일 이상인 경우에 상장폐지 (10일 이상 연속 괴리율은 2004/1/29부터 적용, 분기별 괴리율은 2004/1/1부터 적용)
 - 괴리율 = [(종가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 × 100

- 유동성공급자 미지정 요건 신설 (37조의3 2항 및 40조 2항 : 2003/12/26 개정, 2004/7/1 시행)
 - 유동성공급자제도 시행일 후 1월 이내에 유동성공급자 미지정시 상장폐지
 - 매분기말 기준으로 최근 3월간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 미지정시 상장폐지

○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 예고 (41조의2 1항, 2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괴리율이 3%를 초과하거나 또는 유동성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유동성공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음을 예고

○ 거래량 관련 퇴출요건 개선 (42조의2 1항 7호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거래량 관련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상의 비율요건을 단일화(1%) 및 절대수량(10만주) 개념을 추가하고, 산정기준을 상장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로 전환
- 적정분산요건 충족시 거래량 요건의 적용을 면제
 - 소액주주비율 20%, 그리고 소액주주수 500명

○ 주가 및 시가총액 관련 상장폐지요건 개선

(37조 1항 16호, 17호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관리종목지정 이후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유예기간 중 주가(시가총액)가 액면가액의 20%(25억원)이상으로 10일간 계속 및 누적일수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 공시의무위반과 관련 상장폐지요건 개선 (37조 1항 12호 : 2003/12/26 개정, 2004/1/1시행)
 -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 전에 발생한 공시의무와 관련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는 상장폐지기준을 미적용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ELS(Equity-Linked Security)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2003/3/31 개정 · 시행)
 - ELS의 신규상장신청 및 변경상장 신청시 견양제출을 생략 (2조 2항 1호, 6조의4 1호, 6조의5 2항 1호)
 - ELS의 액면을 1만원 이상으로 제한 (10조 2항)

- 만기연장 가능 옵션부채권의 연부과금 납부근거 신설 (19조 11항 : 2003/4/18 개정, 4/19 시행)
 - 「채권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의 상환잔존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상환잔존기간 중의 연부과금은 신규상장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
 - 만기연장 신청시 이를 신규상장 신청에 갈음하여 연부과금을 납부
 - * 「채권형태의 신종자본증권」 : 만기구조가 유한(30년 등)하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영구채에 준하는 만기구조를 갖는 채권」

○ 연부과금은 상장기간 동안만 부과 (19조 9항 : 2003/4/18 개정, 4/19 시행)

— 연부과금 선납 채권의 상환잔존기간 중 상장폐지에 따른 기납부 연부과금 반환시 공제금액 산정대상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

• 「상장폐지일」 까지 월할 계산한 금액

→ 「상장폐지일 전일」 까지 월할 계산한 금액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

(17조 : 2003/6/20 개정, 6/23 시행)

— 지정시기 : 관리종목지정기준 해당사실 확인일의 익일

— 해제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 연장 (1조의5 : 2003/6/20 개정, 6/23 시행)

—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을 기존 2월에서 3월로 연장

○ 상장관련 서식의 개정 (별지 : 2003/6/20 개정, 6/23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재상장신청서 서식 및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 신고에 관한 서식 등을 개정

○ 주권의 재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서류 정비

(1조의3 4항, 5항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 재상장의 경우에도 예비상장심사를 거치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를 정하되, 주권 신규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준용

-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정비 (1조의7 2항, 3항, 5항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를 재상장의 유형별로 명확히 열거하여 재상장신청인의 편의를 도모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산정기준 폐지 (1조의4, 9조의2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 및 재상장요건 중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산정기준을 폐지

- 적격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신설 (8조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의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외 동시공모로 인정하는 적격 외국증권시장의 범위를 정함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 변경 (17조 2항 12호, 13호 : 2003/9/23 개정, 9/24 시행)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를 변경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사유해소 확인일 익일 → 관리종목 지정일을 포함하여 60 매매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상장폐지기준 미해당시로 한정)

○ 유동성 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 신설 (9조의2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가 지정판매회사 중 1사 이상과 체결하는 유동성 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

- 매도/매수호가간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 이내로 유지되도록 의무적으로 호가 제시
- 매도/매수호가간 호가가격차이가 호가가격단위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면 그로부터 2분 이내에 의무호가 제시
- 의무호가를 제시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의 신고사항 추가 (10조의4 1항 16호 및 10조의8 2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상장지수펀드 운용회사가 지정판매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변경·해지시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거래량 요건 적용시 월평균거래량 산정방법 명시

(11조 6항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분기 중 병합·분할·증자·감자로 인한 월평균거래량 조정은 당해 비율대로 조정

- 증자·감자의 경우 유동주식수 증가율 또는 감소율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 명시 (17조 2항 12호, 13호 : 2003/12/26 개정, 12/29 시행)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해제시기를 명시
 - 주가(시가총액)가 액면가액의 20%(25억원)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되고 그리고 누적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해제

7. 상장법인 공시규정

- 현금배당 결정과 관련한 공시의무사항 정비 (2003/3/29 개정 · 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익일 공시하고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4조 2항 38호)
 - 현금배당 공시후 배당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추가 (17조 1항 13호의2)

-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의 확충 (2003/3/29 개정 · 시행)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당일에 공시
(4조 1항 13호의2)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인 때 당일에 공시
(4조 1항 13호 나목)

- 감사보고서를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하여 공시시한 단축

(4조 1항 13호 : 2003/3/29 개정·시행)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그 당해 감사보고서를 당일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8.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중요정보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대상의 추가 (9조 1항 : 2003/3/29 개정·시행)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인 경우
-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확대 (6조의2 : 2003/9/23 개정·시행)

-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세칙 6조의2를 삭제하여, 기공시 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에서 「기공시 내용을 변경한 모든 경우」로 확대

- 공시번복의 적용예외 대상 추가 (7조 : 2003/9/23 개정·시행)

-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당해 시장에 공시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자본도입 등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 증여를 받기로 한 때

○ 관계기관간 규정해석이 상이한 사항의 통일 (7조의2 1호 : 2003/9/23 개정·시행)

-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10% 미만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여 금감원의 해석과 통일을 기함

○ 당일 공시 불이행 적용시한 변경 (6조 : 2003/11/20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7:30~8:30)에서 전일 협상이 완료된 주문은 개장 즉시 매매체결이 가능하므로, 주요내용 공시에 따른 시장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불이행 적용시한을 앞당김
 - 공시사유발생일 익일 오전 8:00 → 7:20
- 토요일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오전 10시까지 신고하도록 단서 추가
 - 금융감독원이 토요일 전자공시시스템 개방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

○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의 중요내용 공시시점의 명확화

(9조 2항 1호 : 2003/11/20 개정, 12/1 시행)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1시간 동안에는 중요내용의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완전하게 전달될 수 없으므로, 매매거래재개시간을 정규시장 개장 1시간 이후로 연장

- 대형주문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특성상,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
- 「공시 등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그 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간 이전인 경우, 공시 등이 「정규시장매매거래개시시간」에 된 것으로 변경

9. 공정공시 운영기준

- 대상정보의 명확화 (3조 1항 : 2003/3/13 개정, 4/1 시행)
 - 기간 개념 도입
 -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과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의 대상기간을 3년으로 한정
 - 장래사업의 경영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존 신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 등 내용에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을 추가하고 「기타 조항」을 삭제
- 홍보성 공시 방지를 위한 규정 보완 (3조 1항, 2항, 3항 : 2003/3/13 개정, 4/1 시행)
 -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공시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 의무화
 -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예상효과」를 기재
 -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시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

- 영업실적 공시시 비교수치 기재 의무화
 - 전년 동기 및 전기의 실적을 병행 기재

- 공정공시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003/3/13 개정, 4/1 시행)
 -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에서 「정보제공대상자」로 재분류 (5조 2항)
 - 다만, 이사회 구성원인 경우는 임원으로 분류되어 제공자에 속하게 됨
 - 보도자료 배포시 「엠바고」 관련 조항을 삭제 (7조 5항)
 - 보도자료 배포시 공정공시의무를 부여

- 상장법인의 업무부담 경감 (9조 2장 5호, 5의2 : 2003/3/13 개정, 4/1 시행)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출계약 관련 정보제공시 비밀유지 동의서 면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정보제공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의 비밀유지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종전에는 모든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음

IV. 증권업협회 규정

1.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ETF)의 등록요건 신설 (12조의2, 12조의3 : 2003/3/28 개정, 3/29 시행)

— 규모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100억원 이상, 발행주식수(수익증권수)가 10만주(좌) 이상

— 유동성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지정판매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가 2사 이상일 것
 - * AP는 발행시장에서는 ETF의 설정·환매를 전담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자산의 구성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추적대상지수 구성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 이상 편입
 - * 주가지수와 순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0.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지수추적오차 발생을 최소화
 - 다만, 추적대상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지수구성 전종목을 편입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
 - * 펀드내 구성종목과 지수구성 종목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

- ETF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존속기간(신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을 것
 - * 기존펀드는 환매를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지만 ETF는 증권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환금이 가능하므로 만기가 불필요
 - 추적대상지수 사용과 관련한 계약요건을 거래소시장과 통일
 - 협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경우, 협회와 지수사용허가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을 의무화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변경등록 근거 신설 (14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주권의 신주발행 또는 환매로 인하여 주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수익증권의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수량을 변경한 경우
 - 변경등록예정일의 1일(매매일 기준)전까지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거래소시장과 통일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등록취소 요건 신설 (30조의2, 30조의3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자본금(신탁원본액) : 50억원 미만이 된 날부터 3월내 미해소시
 - 등록주식수(좌) : 5만주미만이 된 날로부터 3월내 미해소시
 - 주주(수익자)수 : 사업연도말 현재 100명 미만시. 다만,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외

- 거래량 : 연간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좌)미만시. 다만,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외
- 기타 : 증권투자회사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등록취소 예고제도 신설 (28조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의 경우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순자산액이 1개월간 계속하여 정관상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시
 -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수가 5만주 미만시
-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수익증권수가 5만좌 미만시

○ ETF의 신고의무 부과 (2003/3/28 개정, 3/29 시행)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의 신고사항 신설 (25조의2)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 등록지수증권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증권투자회사법 55조에 의한 금전분배
 - 증권투자회사법 60조에 의한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

- 증권투자회사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책임자(운영이사 1인) 지정 및 변경
-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 등록법인의 신고사항 신설 (25조의4)
 - 등록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관리서류 제출
 - 등록된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 수익증권의 금전분배
 -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등록요건 신설 (12조의4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자본금 : 500억원 이상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최저자본금은 500억원
- 분산요건 :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이고 주주수가 100명 이상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CR리츠의 경우에는 30% 이상 분산요건 적용 배제
- 자산구성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 신설 (22조 1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일반 협회등록법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되, 주식분산, 거래실적부진 요건은 적용배제

- CR리츠의 경우 사외이사 구성요건 미적용, 일반리츠 및 CR리츠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미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요건 신설 (23조 1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일반 협회등록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되, 주된 영업정지 요건은 적용을 배제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로 신설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구성요건 미달시
 - * 자산구성요건 :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할 것.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일 것
-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배당요건 미달시
 - * 배당요건 :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배당(CR리츠는 배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취소요건 신설 (28조 5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일반 협회등록법인의 등록취소요건을 적용하되 주된 영업정지, 거래량, 분산요건은 적용을 배제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로 신설

- 자산구성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재차 미달시
- 배당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재차 미달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코스닥시장 등록제한

(7조 8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등록심사를 기각하고 이미 등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
 - 경미한 조치(감사인 지정·변경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경우에는 질적 심사를 통해 처리

○ 협회등록이 불허된 법인의 시장진입 제한 (4조의2 1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예비심사청구가 기각되거나 또는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법인은 3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제한
 - 검찰고발·통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정정시 신규등록심사 요건 미충족의 경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23조 1항 8호의2 : 2003/6/14 개정, 6/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된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4조의2 3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제한

- 코스닥시장 등록기준 개선 (2003/9/5 개정, 2004/1/2 시행)
 - 감사의견 요건을 적정으로 제한 (5조 1항 8호)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감사의견 요건을 기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 경우 제외)」에서 「적정」으로 변경
 -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 도입 등 (5조 1항 2호, 6조 1항 1호·2호)
 - 건설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ROE 요건)를 도입하는 등 진입요건을 개선
 - 일반기업 요건 개선 :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ROE(최근사업연도말 10%) 요건 신설
 - 벤처기업 요건 개선 : 자본금(5억원 이상), 경상이익 시현, ROE(최근사업연도말 5%) 요건 신설

- * 자기자본이익률(ROE) = $\frac{\text{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text{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 \times 100$

-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 완화 (15조 1항 : 2003/9/5 개정, 9/8 시행)
 - 코스닥기업과 비공개기업과의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 및 5% 이상 주주의 지분변동금지기간을 단축

- 1년 → 6월

* 신규등록의 경우 기존 지분변동금지요건(1년)을 유지

— 소량 지분변동의 예외적 허용

-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5%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0.1% 미만(1,000주 한도) 변동을 허용

*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수량변동금지요건을 유지

○ 상법상 소규모합병시 합병요건 완화 (15조 3항 : 2003/9/5 개정, 9/8 시행)

— 상법상 소규모합병의 경우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5% 이상 주주 포함)의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배제

- 비공개기업이 코스닥기업과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다른 비공개기업과 합병 등을 한 경우, 당해 비공개기업과 코스닥기업이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산재무제표 확정요건의 적용을 배제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 자본금변경 및 지분변동 제한 · 합병전 비공개기업과 합병한 경우 결산재무제표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배제 · 결산재무제표요건 적용배제

○ 합병후 단기분할시 심사요건 완화 (15조 1항 2호 : 2003/9/5 개정, 9/8 시행)

- 기존에 비공개기업과 합병한 코스닥기업이 3년내 재차 분할하여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요건을 요구하였던 것을 상법상 소규모합병을 하여 3년내 분할하는 경우에는 일반분할 수준으로 요건 완화

기 준	개 정
<p>[합병후 3년내 분할 재등록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시 심사요건 + 지분변동 제한, 경상이익, 결산재무제표 요건 	<p>[소규모합병후 3년내 분할 재등록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변동 제한, 경상이익, 결산재무제표요건 적용배제

○ 기업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관리·퇴출기능 강화

(23조 1항 : 2003/9/5 개정, 2004/1/2 시행)

- M&A 등을 통한 코스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종목 및 퇴출기준으로 경상이익 및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
 - 다만, 신설요건과 유사한 영업손실·경상손실·부채비율 요건을 폐지
-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최소주가 요건의 기능을 제고
 - 액면가의 30% → 액면가의 40% (2004/7/1 시행)
 - 관리종목으로 지정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2.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부동산투자회사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 (16조 : 2003/3/29 개정·시행)
 - 매분기말 자산구성요건 미달 확인시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배당요건 미달 확인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사업보고서 등에 의한 당해 사유해소 확인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 REITs 및 ETF 등록수수료 등 징수근거 신설 (등록서식3 : 2003/3/29 개정·시행)
 - REITs 및 ETF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에 준하여 등록수수료를 징수
 - * 현행 코스닥기업의 자본금 대비 효율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3(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수준
 - REITs 및 ETF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에 준하여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
 - * 현행 코스닥기업의 자본금 대비 효율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3(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수준

-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등의 면제대상 확대 (23조 : 2003/5/28 개정, 6/2 시행)
 - 수수료 부과일 현재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포함)가 진행중인 협회 등록법인에 대한 추가·변경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를 면제
 -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에 대한 등록유지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

- 면제되는 수수료의 종류 및 면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협회중개시
장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함

※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의 선
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됨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명확화 (16조 1항 : 2003/6/14 개정, 6/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의 기소 또는 증권선
물위원회의 조치(검찰통보·고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된 관리종목 지정시기 및 해제시기를 명시

- 지정시기 : 확인 즉시
- 해제시기 :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의 익일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 명확화 (2003/9/5 개정, 2004/1/2 시행)

— 최근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있고 사업보고서
의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60일(매매일기준)기간 동안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연속이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16조 1항
7호의2)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차기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경상손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또는 차기사업연도에도 경상손실
이 발생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

터 등록취소사유 없이 60일(당해종목의 매매일기준)
이 경과한 날

3.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주식시장과 ETF시장을 구분 (4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ETF(등록지수펀드)는 기존 주식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유가증권이므로 코스닥시장을 주식시장과 ETF시장으로 구분

- ETF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6조, 20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ETF증권 또는 주식집단의 결제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매도호가 허용
 - 신규·추가설정시 ETF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결제일까지 당해 ETF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매도호가 허용
 - ETF 환매시 주식집단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환매로 교부받을 주식집단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 매도호가 허용
 - 주권거래와 동일하게 ETF도 공매도의 경우 직전가 미만의 매도호가(down-tick)를 금지
 - 다만, ETF 차익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주권과 동일하게 직전가 미만의 매도호가를 허용
 - 대용증권에 ETF 포함
 - ETF 및 주식집단(주식바스켓)의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위탁증거금으로 이용될 ETF를 대용증권에 포함

○ REITs 매매제도의 정비 (2조 16호, 31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REITs에도 일반 주권의 매매방식을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매매거래중단 사유 추가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배당 또는 금전의 배분을 목적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매매거래를 중단

○ 지수차익거래에 대한 개념 명시 (2조 6호 가목, 나목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지수차익 또는 지수비차익거래의 개념을 선물지수와 연계한 코스닥 50지수로 명시
 - 종래에 차익거래 또는 비차익거래 대상 지수를 「등록종목을 기초로 하는 지수(코스닥지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코스닥50」으로 명확화
 - 선물거래종목 뿐만 아니라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도 지수차익거래에 포함

○ 자사주 취득 호가가격 상한 개선 (21조 1항 2호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중 자사주 취득시 호가제출상한은 「주문직전 당해 종목의 당일 최고가와 주문시점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기 준	개 정
주문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	주문직전 당해 종목의 당일 최고가와 주문시점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

○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호가가능시간 확대 (21조 1항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장중에도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이 가능토록 하되,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는 호가제출을 제한

기 존	개 정
장개시 동시호가에 주문 (정정주문의 경우 장중호가 가능)	장개시 동시호가 및 장중에도 신규 주문제출 가능 (단, 신규 및 정정주문 모두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제한)

○ 시간외대량매매방법에 의한 자사주처분 허용 (21조 5항 : 2003/9/26 개정, 12/1 시행)

- 호가가능가격은 일반적 시간외대량매매와 달리 당일 종가와 그 가격으로부터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당일 하한가를 한도로 함)의 범위내로 함

* 일반적 시간외대량매매 호가가능가격 : 당일종가의 $\pm 7\%$

○ 자사주신탁매매관련 규제제도 신설 (9조의2 : 2003/9/26 개정, 12/1 시행)

- 자사주신탁매매시 자사주신탁매매거래계좌를 설정
- 자사주신탁매매시 직접 취득·처분시 적용되는 규제 적용
 - 호가가능가격 및 협회신고 등에 관한 동일 규제 적용

○ 장개시전 시간외매매제도 도입 (4조 2항 2호 : 2003/12/26 개정, 시행일 미정)

— 시간외시장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구분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 오전 7:30 ~ 8:30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 오후 3:10 ~ 4:00

○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의 가격 (29조 2항 : 2003/12/26 개정, 시행일 미정)

— 전일종가를 기준

- 호가를 하는 날에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주식분할, 액면병합되는 종목은 그날의 기준 가격
-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은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4.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대량매매호가 제한 근거 신설 (18조의2 2항·3항 : 2003/2/4 개정, 2/10 시행)

— 호가수량이 등록주식수의 5%를 초과하는 호가의 경우 입력할 수 없도록 함

- 단, 시간외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의 경우는 예외

○ 주식병합종목의 시초가 산정방식 변경 (업무서식5 : 2003/2/4 개정, 2/10 시행)

—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병합비율이 다른 경우, 소액주주의 병합비율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가격의 50% ~ 200%범위 내에서 동시호가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

— 주식병합과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한 경우 호가최소단위인 10원 ~ 평가가격의 200%범위 내에서 동시호가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

* 대규모 유상증자 : 평가가격의 50% 미만으로 발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수가 당해 유상증자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 호가가격 단위 축소 (24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5,000원 미만의 호가단위로 5원을 추가하고, 100,000원 이상의 고가주는 100원으로 통합하여 5단계를 4단계로 축소

기 준		개 정	
주권가격	호가가격단위	주권가격	호가가격단위
10,000원 미만	10원	5,000원 미만	5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원 이상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

○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12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ETF에 대하여도 주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을 산정

- 기준시세 : 적용일의 종가
- 사정비율 : 70%

○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거래방법 개선 (23조의2 : 2003/3/28 개정, 3/31 시행)

— 등록취소 종목의 경우, 정리매매기간(7일)중 접속매매방식에 의거 가격제한폭(12%, 첫날 제외)내에서 체결하던 방식을 30분 단위 동시호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격제한폭 적용을 배제

	기 존	개 정
최초매매일	가격제한폭 <u>미적용</u> 08:00 ~15:00 (동시호가방식)	가격제한폭 미적용(7일내내), 30분간격(1일13회)호가 접수후 동시호가방식으 로 매매함
2일~종료시	가격제한폭 <u>적용</u> 접속매매방식	

- 시간외매매(종가, 대량매매)시에는 시간외매매의 방법을 준용
- 시장의 임시정지, Circuit Breakers 발동후 거래재개시에는 재개시점을 기준으로 30분 단위로 동시호가방식으로 매매함. 단, 재개시점이 오후 2시 50분 이후인 경우에는 오후 3시까지의 호가를 매매체결

○ 시초가 결정방법 개선 (업무서식5 : 2003/3/28 개정, 3/31 시행)

-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신규등록, 재등록 및 주식병합시), 시초가 산출시점을 장종료시에서 장개시시로 변경

	기 존	개 정
호가범위	평가가격* 대비 90%(병합시 50%) ~ 200%	(종전과 동일)
호가시간	08:00 ~ <u>15:00</u>	08:00 ~ <u>09:00</u>
시장가호가	○	×

* 평가가격 : 신규등록시 공모가격(공모시) 또는 주당순자산가치(직등록시) 등

-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MF 및 ETF), 시초가 산출시점을 장종료시에서 장개시시로 변경

	기 존	개 정
호가범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12%	(종전과 동일)
호가시간	08:00 ~ <u>15:00</u>	08:00 ~ <u>09:00</u>
시장가호가	○	(종전과 동일)

○ 장기간 점진적 상승세에 따른 감리종목 지정(예고)요건의 삭제

(38조 : 2003/7/11 개정, 8/4 시행)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등록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예고)요건을 삭제

○ 감리종목 지정(예고) 회수 축소 (38조 : 2003/7/11 개정, 8/4 시행)

- 3회 → 2회

○ 감리종목 지정(예고) 기준의 일관성 유지 근거 신설

(38조 2항 : 2003/7/11 개정, 8/4 시행)

- 액면분할, 주권병합, 감자, 증자 등으로 종가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증가를 기준으로 감리종목 지정(예고)

○ 감리종목지정시 신규등록종목 및 종합주가지수대비 요건 신설

(38조 1항 : 2003/7/11 개정, 8/4 시행)

-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신규등록종목의 최고주가기간 기준(경과기간 적용) 신설
- 최근 20일간 종합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종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 요건 신설

○ 감리종목 지정해제요건 변경 (39조 : 2003/7/11 개정, 8/4 시행)

-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로 변경

○ 감리종목 지정(예고) 예외조건 변경 (38조 4항 : 2003/7/11 개정, 8/4 시행)

- 감리종목 지정(예고) 예외조건 4가지(관리종목지정, 30일 초과 매매 거래정지, 감리종목 해제일로부터 5일간, 정리매매중인 종목) 중 정리매매종목만 예외조건으로 잔존시키고 나머지 요건은 폐지

○ ETF 분배락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

(업무서식6 8호 : 2003/7/11 개정, 8/4 시행)

- 등록지수펀드로서 금전의 분배를 신고한 종목은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증가에서 주(또는 좌)당 분배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산정

○ 자사주 매매관련제도 개선 (19조의3 : 2003/10/28 개정, 12/1 시행)

- 자사주 취득·처분을 위한 호가횟수제한 폐지
 - 장중 신규호가 가능에 따라 기존 호가횟수제한(1일 1회)을 폐지
- 자사주 신탁매매시 호가수량 제한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호가수량 제한

○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 세분화 (4조 2항 9호 : 2003/10/28 개정, 12/1 시행)

- 외국인 매매통계의 집계기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세분화하고 투자자분류의 사후관리를 강화
 - 위탁자의 투자자분류코드 변동시 증권회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도록 함

기 준	개 정
외국인·외국법인 :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ID)가 있는 외국인 : 9000 · 기타 외국인 및 외국법인 : 9001

- 대용증권 지정제외사유 추가 (9조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자진등록취소신청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대용증권 지정에서 제외

- 단일가매매 호가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36조의2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의 매매편의 제고를 위한 호가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
 - 최우선 호가 및 수량(1단계) →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포가 및 각 호가의 수량(3단계)

- 최초 매매기준가격 산정시 평가가격 등 별도의 산정근거 마련

(36조의2 업무서식5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최초 매매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최저·최고 호가가격 또는 평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별도의 산정근거를 마련
 - 소액주주의 주식병합 종목에 대한 평가가격 산정시 변경·추가 등록 전에 발생한 주식분할·권리락 등을 감안하여 결정

5.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9조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인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수시공시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를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 부동산 자산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등

○ 현금배당 결정 관련 공시의무사항 신설 (6조 1항 7호 라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의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하고,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협회등록법인의 현금 배당시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 현금배당 관련 공시변경 기준 신설 (23조 5의2 : 2003/3/28 개정, 3/29 시행)

- 현금배당 공시후 주당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으로 간주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감사보고서의 공시시한 단축 및 공시사항 추가 (6조 1항 : 2003/3/28 개정, 3/29 시행)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시한을 단축

-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포함)인 경우 또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자본전액 잠식 포함)인 경우는 해당사실을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
 - 종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포함)시 당해 기업에 조회공시 후 이를 공시하였음

6.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일반등록기업의 공시번복 적용 면제대상 확대 (8조 : 2003/3/28 개정, 3/29 시행)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이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포함)이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인 경우를 공시번복 적용 면제사항에 추가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일반등록기업 공시번복 면제사유 이외의 다음 사항을 적용면제 대상으로 추가 (8조 7호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부도,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

- 매매거래 정지사유 확대 (10조 1항 7호 : 2003/3/28 개정, 3/29 시행)
 - 등록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60분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의 단축 (9조 2항 : 2003/7/11 개정, 7/21 시행)
 - 기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공표하게 되어 있는 2년간의 해당 사실 공표기간을 1월간으로 단축
 - 다만, 불성실공시 지정 2회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해당 사실을 불성실공시법인 최초지정일로부터 2년간 공표하는 기존 시장관리 조치사항은 유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신설
(9조 7항 : 2003/7/11 개정, 7/21 시행)
 - 공시서식 신설을 통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구체화

<공시서식의 내용>

 - 신청취지
 - 신청이유

가.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의 근거규정

나. 불성실공시지정 예고 관련 사실관계

다. 당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논거 또는 당해 사실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논거

-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

7.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주관회사 제한의 완화 (2조 11항, 6조, 14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주관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공모예정기업의 주관회사 선택의 폭을 확대하되, 공모예정기업과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간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

- 제한의 대상이 되는 상호출자비율한도를 3%에서 5%로 완화
- 발행회사 임원이 주관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관회사 허용
- 공정위가 인정한 계열분리법인에 대해서는 친족조항의 적용 배제
- 계열분리후 1년 미경과법인을 이해관계인에서 제외
- 이해관계있는 인수회사의 실질적 간사업무 수행 금지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의 일부 예외 인정 (3조 2항 3호 : 2003/8/26 개정, 9/1 시행)

— 국내외 동시 상장시 대표 주관계약 체결시한(6개월) 적용 배제

- 해외적격시장의 경우 그 진입요건이 엄격하고, 대표 주관계약 체결시한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없으며, 국내 증권회사 뿐

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증권회사가 기업실사에 공동참여하므로
체결시한의 예외를 인정

○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diligence) 이행에 대한 심사 강화

(3조 3항 : 2003/8/26 개정, 9/1 시행)

— 발행회사의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실사근거 및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 (9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시의 주식배정비율을 조정

- 우리사주조합원 :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의 20% 의무배정

협회등록공모시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

-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 : 공모주식의 30% 배정

	기존	2004년 3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	2004년 9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
거래소상장	45%	40%	30%
협회등록	55%	45%	30%

* 배정비율의 축소에 따른 고수익펀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6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9월까지 점진적 축소

-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0% 이상 배정
- 기관투자자 : 잔여주식 배정

- 초과배정옵션 부여시 매수가격 인하 (10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간접적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과배정주식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격의 100%에서 95%로 완화

- 시장조성제도 폐지 (11조 : 2003/8/26 개정, 9/1 시행)
 -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한해 상장후 1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가 장외에서 매수토록 의무화
 - 일반청약자에게 put-back option 부여

- 조합을 통한 주식보유를 직접보유로 간주 (6조 2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주관회사의 자격과 관련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보유를 직접보유로 간주

- 1인당 청약한도 제한 (8조 4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되어있는 공모주식의 10% 이내에서,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를 정함
 - 청약증거금 대출규모, 공모물량, 발행가격 등을 고려

- 대표주관회사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의 적정 설정의무 부과
(8조 5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해야 함

- 외국법인의 수탁계약서 사전심사제 도입 (12조 3항 : 2003/12/15 개정 · 시행)
 -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시,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음

8. 채권장의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 시가평가업무 중단에 따른 관련규칙 폐지 (부칙 3조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채권시가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시 (6조 1항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최종호가수익률의 일종인 “채권종류별 잔존 만기별 시장수익률”로 변경하여 발표

9. 채권장의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공시대상 채권의 조정 (3조 및 4조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국고채권을 6개월 단위로 통합발행함에 따라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잔존기간을 조정

- 2년 9월 ~ 3년 → 2년 7월 ~ 3년

— 공시대상 채권의 추가 및 변경

- 예금보험공사채권 3개월을 공시대상채권에 추가
- 공시대상채권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년에서 15년으로 변경

○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의 도입 (4조 5항 : 2003/12/16 개정, 2004/1/1 시행)

— 시가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

— 협의사항

- 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 수익률의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등

10.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점포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35조의13(영업보고서) 8호와 관련 사항
 - 매월 협회에 보고되는 「회원사 현황」의 서식과 동일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보완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과 일치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중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을 보완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2002년 12월 개정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일치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작성기준이 되는 기재상의 주의를 전반적으로 보완 (별지 4호 서식 : 2003/1/13 개정·시행)
 - 작성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의무화 (6-2조의2 : 2003/2/7 개정, 4/1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을 의무화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할 필수사항을 협회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내부통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비위행위 조회업무의 전산화근거 마련 (4-3조 : 2003/2/7 개정, 3/1 시행)

— 증권회사는 종업원 채용시 채용예정자의 비위행위 경력 등을 사전에 조회하여야 하므로, 동 업무를 전자통신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증권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

○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보수지급 제외대상 확대 (4-31조 : 2003/2/7 개정, 3/1 시행)

— 보수지급 제외 및 환수가능 범위를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비상담 약정까지 확대·적용

- 증권회사는 상담계좌에서 발생한 약정 중 상담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부문은 보수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전담투자상담사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 일반계좌에서 임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실현한 약정에 대하여는 보수가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개선

○ 제재양정기준 개선 (별표11 : 2003/2/7 개정, 3/1 시행)

— 제재양정기준 중 전담투자상담사의 상담계좌와 일반계좌 허위분류 및 관리계좌 변칙등록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변경

- 기존 「위규행위로 수탁한 약정금액」에서 투자상담사가 당해 위규행위 결과 「회사로부터 추가지급 받은 보수」로 변경

※ 등록전문인력 제재양정기준

【상담계좌와 일반계좌의 허위분류】

— 위규내용

일반계좌를 상담계좌로 허위분류하거나 상담계좌 중 상담행위의 수반없이 단순 매매주문의 수탁행위만 발생한 주문을 상담행위가 수반된 주문으로 허위 분류하는 행위

— 제재양정

허위분류결과 추가로 수취한 보수	협회양정기준 (재등록 거부기간)
4천만원 이상	등록취소 (1년)
2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4월)
1천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3월)
1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2월)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월)
5백만원 미만	경고

【관리계좌 변칙등록】

— 위규내용

일반직원 또는 다른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직원 또는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

－ 제재양정

변칙등록결과 추가로 수취한 보수	협회양정기준 (재등록거부기간)
4천만원 이상	등록취소 (1년)
2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4월)
1천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3월)
1천만원 이상	자격정지 (2월)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월)
5백만원 미만	경고

○ 제재내역 조회절차 및 방법 개선 (4-9조 : 2003/3/6 개정, 4/1 시행)

－ 조회절차

-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관리 직원 또는 관리예정 직원의 제재내역 열람을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 증권회사는 당해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재내역 통보를 협회에 요청
- 협회는 제재내역을 당해 증권회사에 통보하고, 증권회사는 협회의 통보내용을 신청 고객에게 통지

－ 열람신청 가능자 등의 제한

- 「제재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를 당해 증권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으로 한정
- 「조회대상자」는 신청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신청인의 계좌 관리직원 또는 관리예정 직원으로 국한
- 무분별한 조회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방법을 서면으로 한정

○ 통지대상 위규행위 및 통지내용 명시 (4-10조 2항 : 2003/3/6 개정, 4/1 시행)

—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은 다음 행위와 관련된 견책 이상의 제재내역 및 위규내용

-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 고객예탁재산 및 증권회사 재산의 횡령 및 유용
- 고객에 대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및 손실보전
- 고객 매매주문동향 등의 부당한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 허위사실 또는 풍설의 유포 등

— 통지대상의 제외

- 주의 등 계도성 차원의 제재와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에 대한 제재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제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징계면직은 10년, 정직은 5년, 감봉 및 견책은 3년

○ 제재내역 공개에 대한 증권회사 직원의 동의 및 정정신청권 부여

(4-11조 : 2003/3/6 개정, 4/1 시행)

— 제재내역 통보는 당해 직원이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

-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

— 증권회사 및 당해 직원에 대해 협회통보 제재내역에 대한 정정신청 권을 부여

- 협회는 정정여부 및 정정내용을 당해 증권회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용어변경 (1-2조, 1-4조, 1-7조, 2-2조, 2-3조, 2-4조, 2-5조, 2-17조 등 : 2003/5/20 개정·시행)

—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심의위원회의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증권업감독규정과 용어상의 일관성을 도모

- 시스템 트레이딩 → 시스템 매매
- 잔고 → 잔액·잔량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상향조정 (별표3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500만원 → 1,500만원

○ 추가위탁증거금의 납부시한 및 결제시한의 단축

(별표3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고객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시한 및 결제시한을 각각 다음날 12시 이내에서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한까지 단축 가능함

-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별표6 외화증권거래설명서 : 2003/5/20 개정·시행)
 -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외국에 상장된 뮤추얼펀드 등으로 확대
 - 일반투자자의 사채권 및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안전 확보

-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 추가 (별지 4호 서식 IV.5 : 2003/7/4 개정·시행)
 -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에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주식매수선택권 총부여 현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 연중(분기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및 취소

- 증권회사의 채용제한 범위확대 (4-4조 3항 : 2003/7/22 개정, 9/1 시행)
 -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응시제한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제한 대상자의 범위에 추가

- 증권회사의 직원제재내역 보고범위 확대 (4-7조 1항 : 2003/7/22 개정, 9/1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해 소속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동 사법적 제재내역을 증권업협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비위행위 조회제도 활성화 (4-9조 3항 : 2003/7/22 개정, 9/1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비위행위 제재 내역 조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 투자일임계약의 최소계약기간 설정 (2-19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투자일임고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일임계약의 최소 계약기간을 6월로 제한

-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자산운용 (2-20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자산운용을 위해 고객에게 투자일임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자산운용대상 또는 자산운용금지대상 유가증권 지정
 -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여부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에 대한 투자여부
 -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여부
 - 유가증권의 청약여부 등

- 금융자산관리사(FP)의 선정 (2-21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증권회사는 FP에 대한 주요경력 및 제재내역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투자목적에 적합한 FP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가 FP를 교체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수수료 (2-22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고객예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매실적과 연계된 수수료의 징수금지
 - 예탁재산 증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증가시켜 받는 행위는 성과보수로 간주하여 금지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제한 (2-26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
 - 증권회사 계열사의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및 기업어음 편입금지
 - 비상장·비등록 계열회사 주권의 편입금지
 - 증권회사가 5% 이상 보유 중인 주권의 편입금지(뮤추얼펀드 제외)
 - 증권회사가 인수회사로서 일반청약자에게 부여한 풋옵션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는 주권의 편입금지
 - 고객의 사전신청이 없는 유가증권의 청약금지 및 인수유가증권 중 미청약·미배정된 잔여주식에 대한 편입금지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의 독립성 확보 (2-27조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담당부서는 기업금융 관련부서로부터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작성의무 (6편 보칙 6-2조의3 : 2003/10/17 개정, 10/20 시행)

— FP가 법규 및 회사방침에 부합하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

- 예탁재산의 운용전략, 운용기준, 의사결정과정 및 의사결정기구
- 증권회사 고유재산과 예탁재산 분리운용을 위한 통제장치
- FP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 확립

11.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ETF를 신용공여대상종목에 추가 (별표5 신용거래약관 : 2003/1/8 개정·시행)

— 상장지수투자신탁(ETF)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신용거래를 허용

○ 유가증권의 월간거래내용 등의 통지방식 개선 (2003/5/6 개정·시행)

— 오프라인 고객의 동의나 신청에 의한 경우 전자우편(E-Mail)등 전자통신방법으로 월간 거래내용을 통지

- <별표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12조 1항 5호)
- <별표2>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13조 3항 6호)
- <별표4> 증권저축약관 (10조의2 1항 6호)

○ 금융용어 변경 (2003/5/6 개정 · 시행)

— 잔고 → 잔액 · 잔량

- <별표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7조 2항, 12조 1항 본문 3호 및 4호)
- <별표2> 선물 · 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13조 3항 본문 3호 및 4호, 19조 1항 및 2항) 등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의 미수위탁자에 대한 수탁의 제한

(별표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2003/11/20 개정, 12/1 시행)

— 증권거래소에 「장개시전 시간외시장」(7:30~8:30)이 개설됨에 따라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동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수탁제한 조항을 신설

- 미수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주문은 T+3일 오전 동시호가(8:00~9:00)에 처리되므로,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계좌에 대한 수탁을 제한하여 임의상환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제거
- 다만, 미수정리를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되어 결제이행이 확실한 위탁자로부터의 주문수탁의 경우에는 예외인정

○ 시장가치 평가방법의 변경 (별표 7조 1항 2호 : 2003/12/15 개정,

2004/1/1 시행)

— 채권평가기관 중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평가

- 기존에는 협회규칙에서 정한 방법 또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평가

○ 증권예탁원의 기관간 RP 환매서비스 개선에 따른 변경

(별표8 1조 : 2003/12/15 개정, 2004/1/1 시행)

- 동일 거래당사자간의 여러 건의 거래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개별거래에 한정된 기관간 RP 개념을 단일거래가 포함되도록 확대

12. 운용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 FP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1조의2 : 2003/6/17 개정 · 시행)

-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FP)에게 기존의 투자자문업무(자문형 Wrap Account)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업무(일임형 Wrap Account) 수행도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
 - 다만,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 필요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응시제한기간의 신축성 부여 (13조 : 2003/6/17 개정 · 시행)

-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응시제한기간을 「3년」에서 「3년의 범위 내」로 완화

V. 증권예탁원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계좌대체 제한사유 명시

(19조 4항 4호 : 2003/3/18 개정, 3/19 시행)

- 권리행사를 신청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계좌대체를 제한함

○ 주식워런트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의 권리행사방법 규정

(2003/3/18 개정, 3/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예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권 및 대금 등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배분 (36조의4)
- 추가연계증권의 경우에는 채권원리금과 같이 만기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예탁원이 대금 및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배분 (40조 1항 및 3항)

○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 (별표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 추가연계증권의 경우, 채권과 동일하게 예탁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피합병회사 등의 예탁지정 취소의 시기 및 취소시 유가증권 처리 방법 명시 (2003/4/8 개정·시행)
 - 합병 등으로 인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취소로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의 예탁지정 취소시기를 주권제출만료일 익영업일로 정함 (3조의2 2항)
 - 다만, 합병회사 등의 발행유가증권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일괄예탁통지를 받는 날
 -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취소시 피합병회사 등의 주권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제출하도록 명시 (4조 1항)

- 추가연계증권의 계좌대체 제한 (19조 4항 4호 : 2003/4/8 개정·시행)
 - 추가연계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상환액 지급일전 2영업일간 계좌대체를 제한

-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신설 (34조의2 : 2003/4/8 개정·시행)
 - 예탁원 직원, 기타 예탁원이 정하는 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
 -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주총회 참석시 신분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명시

- 주식매수청구의 신청주식수 산정 기준 명시 (36조 1항 : 2003/4/8 개정 · 시행)
 - 선물거래대용증권 등으로 이용되는 주식수는 주식매수청구의 신청 기준인 최저 보유주식수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

- 주식워런트증권의 자동권리행사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명시 (36조의3 : 2003/4/8 개정 ·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자동권리행사를 정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실기주를 반환받은 고객에 대한 실기주 과실발생사실의 통지 (38조 4항 : 2003/4/8 개정 · 시행)
 -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기주 과실발생사실을 통지받은 예탁자는 실기주를 반환받은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거래소 익일결제분 결제자료의 통지시한 명시 (18조 3항 1호 : 2003/6/1 개정 · 시행)
 - 당일결제의 경우에는 결제시한 30분전
 - 당일결제 또는 익일결제의 경우에는 결제시한 30분전

- 토요일의 비영업일 지정 (20조 1항 3호, 29조 1항, 29조의2 1항, 29조의2 2항, 29조의3 2항 : 2003/6/1 개정·시행)
 - 익일결제 시행에 따른 금요일 채권거래분의 원활한 결제처리와 은행권의 토요일휴무 및 최근 채권거래실적이 전무함을 감안하여 토요일을 비영업일로 지정

- 익일결제분에 대한 매매승인 마감시한 연장 (29조의2 2항, 29조의3 2항 : 2003/6/1 개정·시행)
 - 익일결제분에 대한 거래당일 매매확인 완료에 따른 매매승인 마감시한을 연장
 - 오후 4시 30분 → 오후 5시(토요일은 제외)

- 익일결제분에 대한 결제일 당일 처분제한 근거 보완 (29조의4 1항 : 2003/6/1 개정·시행)
 - 익일결제분인 경우 참가자 보유채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결제일 당일에 매도기관 보유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근거를 보완

3.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의 확대 (3조 : 2003/6/20 개정, 7/1 시행)
 - 협회등록종목 중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을 대상유가증권에 포함하여 상장종목의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 상장채권의 신용등급별 제한을 폐지

- 결제거래의 영업일 기준 명료화 (4조 4항 : 2003/6/20 개정, 7/1 시행)
 - 결제거래의 경우 대차거래기간인 3영업일을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

- 대차거래 단위변경 (15조 1항 및 3항 : 15조 1항 및 3항 : 2003/6/20 개정, 7/1 시행)
 - 대차거래 신청단위 및 신청수량을 참가자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
 - 주식 : 10주 → 1주
 - 상장지수 수익증권 : 10좌 → 1좌

- 분할상환제도 도입 (22조 및 23조 2호 : 2003/6/20 개정, 10/15 시행)
 - 차입자가 대차증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 분할상환의 경우 대차증권 전량을 상환한 때에 대차거래가 종료되도록 함

- 대차거래의 만료일 조정 (23조 1호 단서 : 2003/6/20 개정, 7/1 시행)
 - 대차거래기간 만료일이 예탁자계좌부의 계좌대체 제한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기간 이후로 만료일을 연기

- 대차거래의 종료사유 추가 (23조 5호 : 2003/6/20 개정, 7/1 시행)
 - 맞춤거래의 경우 대역자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한 거래종료를 허용

- 맞춤거래의 종료시 대차증권 및 담보물의 인도방법 신설

(24조 5항 : 2003/6/20 개정, 7/1 시행)

- 대차증권 및 담보물의 인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대역자와 차입자가 합의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4.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 증권대행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추가 (2조 3호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증권대행업무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식워런트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을 추가

- 증권용지에 비통일규격 증권용지 포함 (2조 4호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을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상의 증권용지가 아닌 비통일규격의 증권용지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발행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22조의4 : 2003/3/18 개정, 3/19 시행)

- 위탁회사가 발행대행업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발행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5.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 매입채권과 증거금의 분리 (2조 1항 5호·6호, 11조 2항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표준약관(증권업협회의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약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시장정합성을 확보
 - 매수자의 매입채권 활용에 따른 안정성 제고
 - 일일정산에 따른 증거금 부족(초과)시 매입채권의 납부(반환)대신 다른 유가증권으로 증거금을 납부(반환)하도록 하여 매입채권 활용의 안정성을 제고

- 현금증거금 운영 (2조 1항 6호, 15조의2 2항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일일정산의 결과로 증거금부족 발생시 제공하는 증거금으로 유가증권 외에 현금을 추가

- 동일 당사자간 거래의 통합정산 근거 마련 (11조 단서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거래건별 일일정산방식 외에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에 규정된 통합정산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동일당사자간 다수거래에 대한 통합정산 차감효과를 통한 증거금액의 최소화 및 효율적 위험관리

- 현금상환결제제도 신설 (13조 5항 : 2003/10/28 개정, 11/3 시행)
 -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매입채권에 갈음하여 등가의 현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결제가 불이행될 위험을 축소

- 재매매조건부채권 매매에 관한 규정 삭제 (2003/10/28 개정, 11/3 시행)
 -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buy/sell back) 거래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이를 폐지

6.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 결제회원 신규가입시 결제안정기금 분담금 징수근거 신설

(17조 2항 : 2003/6/20 개정 · 시행)

 - 신규 결제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결제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안정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 납부금액 =
$$\frac{\text{최초의 매매거래 직전일까지 적립된 결제안정기금}}{\text{당해 결제회원을 제외한 총 결제회원수}}$$

7.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 증권회사에 대한 결제회원 자격요건 완화 (3조 1항 3호 : 2003/6/20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결제회원의 자격요건을 코스닥시장 회원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

8.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 증권예탁원의 예탁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원리금 일괄수령·지급의 예외 인정 (15조 2항 : 2003/10/28 개정, 11/4 시행)
 - 발행회사의 부도 또는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예탁원이 예탁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예탁자 또는 고객이 예탁단기금융상품의 원리금에 관한 권리를 직접행사

- 위·변조된 단기금융상품의 처리방법 신설 (16조의2 : 2003/10/28 개정, 11/4 시행)
 - 단기금융상품의 예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변조단기금융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단기금융상품의 표면에 위조 또는 변조의 표시를 하여 예탁자에게 반환 가능

9. 단기금융상품의 예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예탁된 단기금융상품의 원리금 수령 불능사유 명시 (7조 2항 : 2003/11/4 개정·시행)
 -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단기금융상품의 원리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여 예탁된 단기금융상품의 권리행사에 따른 업무리스크를 최소화함
 - 예탁단기금융상품 발행인의 부도 또는 지급불능

- 기타 예탁단기금융상품의 발행인 등의 사정으로 증권예탁원이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10. 담보콜거래 관리업무규정

- 참가자의 자격 (4조, 5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콜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예탁자로 제한
 - 참가자가 선임한 수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한 범위 내에서 당해 수탁기관을 참가자로 간주
- 담보콜거래의 결제방법 (8조 ~ 10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자금중개회사의 담보콜거래 체결내역을 통지받은 예탁원은 참가자들에게 거래자료를 확인하게 한 후 결제자료를 확정
 - 담보콜거래의 체결일에 개시결제
 - 참가자가 예탁원에 납부한 거래금액과 담보를 동시에 결제
- 담보관리방법 (14조, 15조, 17조, 18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담보의 대상은 현금, 상장주권, 협회등록주권, 상장채권, 수익증권 및 기업어음으로 함
 - 유가증권담보는 참가자의 예탁자계좌부상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하고, 현금담보는 자금차입자를 위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담보의 대체 및 교환을 인정

- 담보의 일일정산 (16조 : 2003/10/2 제정, 10/14 시행)
 - 예탁원은 매 영업일 담보콜거래건별로 일일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담보부족액 또는 담보초과액을 참가자에게 통지